

· 토 론 회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태안화력 트라우마 위기 대응 경과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일시 | 2019년 3월 7일 (목) 오전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실 송옥주 · 이용득 · 이정미 · 한정애

주관 |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좌장 하효열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인사말	7
-기본발제	
산재트라우마 관리 현황과 태안 화력 트라우마 대응	
양선희 대구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21
-토론발제	
1. 삼성중공업 크레인 재해 트라우마 관리 사례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69
2. 노동현장 심리적 위기상황 유형과 현행 법제도 한계 -사망사고 등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장경희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 심리치유단 두리공감	97
3. 산업재해 후 트라우마 대응 사례 (말 관리사, 발전소 하청노동자)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진상규명팀	102
4. 산재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개선과제	
고병곤 노동부 산업보건과	117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인 사 말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산재 트라우마 대응, 예산 · 인력확보와 더불어 사고원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모두에게 충격의 영상이었던 이명박 정권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 무력 진압 사건이 있었습니다. 헬기가 노동자들을 토기몰이하고 대 테러 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가 노동자들을 겨눴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습니다. 정신건강의 고통은 자살로 이어져 그 수가 무려 30명에 이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심각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노동현장의 ‘트라우마’가 조명받게 됩니다.

유성기업도 있습니다. 유성기업은 노조를 파괴하려고 조합원을 향해 무차별 폭력, 괴롭힘, 고소 고발을 남발했습니다. 2011년부터 이어진 폭력에 조합원들은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실제 스스로 삶을 놓은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1월에 알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서 유성기업 노동자 10명 중 2명이 최근 1년 간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라우마의 심각함은 산재에서도 나타납니다.

산재 역시 노동자들에게 신체 손상과 더불어 정신건강에 손상을 줍니다.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에서 그 심각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넘었지만 당시 중대재해를 경험하고 목격한 노동자는 현재도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사례는 산재 트라우마 대응이 왜 중요하며 제도가 어떤 허점들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노동부가 산재 트라우마 관리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지원체계 및 관련 전문가 부족 등으로 현장의 심각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재인정의 까다로움으로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와 상담이 보장되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투쟁으로 노동자 요구를 쟁취해왔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삼성중공업 트라우마 대응, 마필관리사 트라우마 대응이 있었기에 태안화력 트라우마 대응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산재 트라우마에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채워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대재해 뿐만 아니라 중독, 노출 등으로 일어나는 직업병 관련 트라우마 대응도 과제입니다. 단순 트라우마 대응을 넘어 재해가 일어난 곳이 안전한 현장이 되도록 사고원인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앞선 경험들이 축적되어 산재 트라우마 대응은 좀 더 빨라지고 내용 또한 깊어질 것입니다.

토론회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는 산재사망이라는 아픔을 복기해야 했기에 준비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동현장이라는 공동체의 아픔을 직시하며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흔쾌히 공동주최를 해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자 의원님, 이용득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발제와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분들 모두 노동자 정신건강에 많은 노력을 해온 분들이기에 오늘 토론회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가 현장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정신건강이 안전보건에서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19년 3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 사 말



송 옥 주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망사고와 태안화력故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산재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를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이정미, 한정애 의원님과 공동 주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7년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는 964명, 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0.52로 미국(0.37, 2016년 기준)이나 독일(0.13, 2016년 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나라별 비교가 가능한 2016년 통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 산재사고 사망률이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 트라우마 피해 대상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전국 21개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산재 트라우마 심리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작년부터 대구근로자건강센터를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로 지정해 노동자 상담을 제공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대구에서만 제공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약하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입는다’라는 등의 트라우마 상담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양성과 지원방안이 대대적으로 확대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트라우마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사업주와 관리자의 인식부족을 개선시키고, 사회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산업재해 현장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보니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가 실제 상담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로 인하여 부상당한 노동자 등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자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가 작년 7월에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어 빠른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재 트라우마는 직접 경험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출된 방안을 바탕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적·입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발제를 해주신 대구근로자건강센터 양선희 부센터장님을 비롯하여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를님,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장경희 상임활동가님, 공공운수노조 조성에 정책기획국장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고병곤 사무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용 득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득입니다.

태안화력 故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트라우마 대응 과정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환경노동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님, 송옥주 의원님, 정의당 이정미 의원님 그리고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8만 명 이상이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고 900명 이상이 중대 산업재해로 사망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목격한 사람,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 사고 관련자 및 현장에 있던 소방관과 경찰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년 8만 명 이상의 재해자와 그 몇 배의 목격자나 간접경험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재해의 트라우마는 그 영향의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동료들은 어제 사고가 났던 사업장을 찾아가 일을 해야 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만성화 되어 치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적극적인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2017년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 이후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매뉴얼을 개발해 전국 21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산업재해 트라우마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대구 근로자건강센터를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로 지정해 전문적인 산재 트라우마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노동현실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재해현장 사고처리에 급급하여 긴급대응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인 피해자들이 나약해서 트라우마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인식시켜야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노동자 트라우마 극복 지원방향과 입법과제가 함께 논의되어 괴로움에 고통 받고 있을 산업재해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산재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위한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이 정 미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 의원입니다.

오늘 <사고경험 노동자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님, 이용득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 그리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님과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7년 산재 분석결과’에서 산업재해자는 약9만여명에 이르고, 산재로 인한 직접손실액 4조3천억을 포함, 경제손실 추정액은 약21조4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용은 드러난 피해에 대한 산술계산 결과일 뿐 사고에 의한 2, 3차 피해에 관련한 통계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이전 정부와 다르게 현재 중대재해의 후처리 대책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노동자가 동료의 참혹한 재해로 겪는 충격과 불안장애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과정과 정부의 예산 문제 등 사회적 준비는 매우 부족합니다. 지난해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후,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많은 피해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발전소 안으로 인도한 것도 문제지만 문잠긴 시설 앞에 방치하는 등 사전 준비를 미숙하게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하더라도 피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심리적 피해를 확대하지는 않았을지 매우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 외에도 많은 과정상의 미숙함과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의 객관적 현실과 문제점을 드러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열정이 헛되지 않게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정 애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故김용균 시민대책위와 노동자 산재 트라우마 상담 및 관리 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실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그간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산재와 사망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은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12월故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더욱 큰 사회 이슈로 떠오르며 마침내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제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을 뿐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만큼 꼭 통과시키고 싶었던 법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논의 과정에 함께해주셨기에 그 의미와 책임감이 더욱 남다른 법입니다. 이에 ‘김용균법’ 통과 이후에도 지난 2월 원·하청을 불문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되도록 하는 보험료징수법을 발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 논의도 이어오는 등 법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법 통과에서 더 나아가 태안화력 산재사망사고 이후 위기 대응 경과를 포함해 재해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노동자의 산재 트라우마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및 입법과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갑자기 발생하는 산재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업장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처리를 최우선으로 해온 만큼, 상대적으로 방치되어 있던 산재 경험 노동자의 트라우마 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견 제시로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논의된 내용을 경청하여 산재 트라우마 상담의 사회적 인식 개선, 트라우마 전문가 양성 방안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고민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늘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기 본 발 제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산재트라우마 관리 현황과 태안 화력 트라우마 대응

대구근로자건강센터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양선희

1.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진행과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극심한 외상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발생하는 장애로,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그 사건과 관련되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일반적으로 반응이 마비되고, 각성상태가 증가하는 증상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8만 명 이상이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으며, 900명 이상이 중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건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을 목격한 사람, 1차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희생자의 유족,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경찰, 소방관 등 응급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사망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사망자의 유가족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입을 수 있다.

1) 2014년 6월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의 산업재해 트라우마 상담 개입

사고 발생 및 상담의뢰 경위

- 2014년 6월 경기도 경기동부지역 내 ○○연구소 포장공정
- 캔 자동포장설비에서 캔 포장 업무를 하던 중에 자동포장기 회전체 안쪽으로 떨어진 캔 두개를 꺼내려다 손목이 끼어서 절단 사고 발생
- 사업주 조치 : 사고 다음날 목격직원 전원 휴가조치
- 사고 직간접 목격자 증상 : 사고이후 관련 근로자가 설비 접근을 꺼려하고, 두려움과 불안 등의 이상증상 및 행동보임
- 관리 담당 직원이 본 센터로 심리상담 의뢰 :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 활동을 요청함

상담의뢰서 수록비전 프로그램 -

산재 및 사고에 따른 트라우마의 심리적 개입 및 대처

2014. 08. 22

○ 근로자건강센터 기획재무

대한산업안전협회 | 대한산업안전협회 | 대한산업안전협회

2) 대구근로자건강센터 트라우마 상담

2016년 6월 대구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후 트라우마 상담 개입

→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에서 산재 사고 알림 및 사업장에 트라우마 상담 권고하고, 사업장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대구 근로자건강센터로 알려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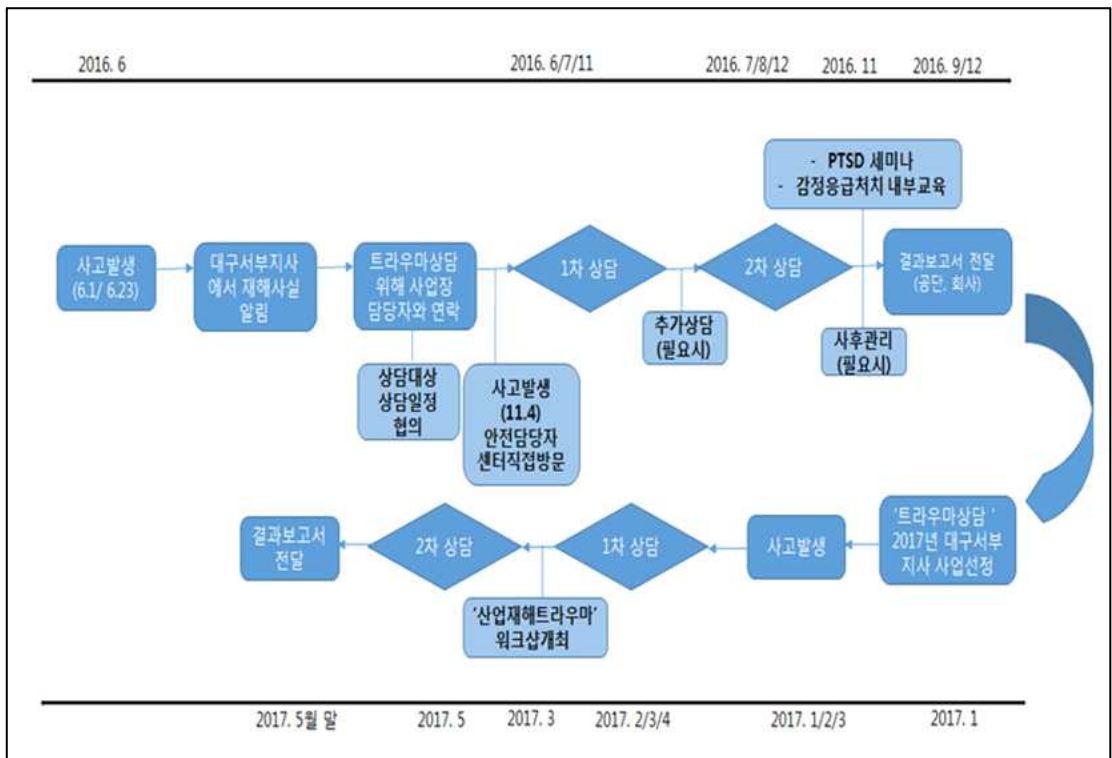
→ 사업장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트라우마 상담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1, 2차 상담 실시함

→ 2016년 하반기 동안 3개 사업장에 트라우마 상담 실시 (그 중 1개 사업장은 대구 근로자건강센터로 트라우마 상담 요청함)

→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에서 2017년의 지사 사업으로 선정 -> 산업재해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으로 명명 -> 공단본부로부터 관심과 주목

→ 2017년 7월 안전보건의 날 행사에서 우수사례로 발표

→ 2017년 9월 산재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작성



3)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트라우마 상담에 대한 관심

- 2017년 9월 경남, 경산, 대구 근로자건강센터의 트라우마 상담 시범사업 실시

- 2017년 11월 전국근로자건강센터의 트라우마 상담 실시

- 2018년 3월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공고
- 2018년 5월 대구근로자건강센터와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계약

4) 트라우마 이론적 배경과 실제 상담에 대한 탐색

- 근로자의 심리건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세미나 개최(2016. 11)
- 감정 응급처치에 대한 내부 교육(2016. 11)
- 전국근로자건강센터 대상으로 산업재해트라우마 워크숍 개최(2017. 03)
- 트라우마 심리지원 전문가 학교: 전국근로자건강센터 트라우마 상담 워크숍(2017년 9, 11)
- 트라우마 심리지원 기본과정 : 전국근로자건강센터 트라우마 상담워크숍(2018. 02)
- 전국근로자건강센터의 트라우마상담 워크숍(인지행동치료 중심으로) (2018. 10)
- 이주노동자 트라우마 상담에 대한 모색 : 자체 워크숍(2018. 8)
- 전국근로자건강센터 트라우마 공개사례발표 및 수퍼비전 실시(2018. 11)
- 전국근로자건강센터 동료 사례회의(2018. 11)

2. 고용노동부 산재트라우마의 관리 매뉴얼의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2017년에 산업재해 트라우마를 관리하기 위한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운영매뉴얼을 만들었다.



산재 트라우마 관리 매뉴얼은 산재사고 발생 시 초기에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기술 하고 있으며, 위기를 경험하는 노동자가 어떻게 정상화, 안정화 될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적절한 초기 개입을 하기 위함이다.

산재트라우마 매뉴얼은 근로자건강센터가 산업재해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였다. 단순한 심리적 개입을 위함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인가가 포커스이다. 산재 트라우마 관리의 시행주체는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고,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제공 주체는 근로자건강센터로 설정하였다.

3. 산재트라우마 매뉴얼 적용과정

1) 운영대상

- 지방관서(고용부나 공단)에서 트라우마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 사회적 이슈로 지방관서에서 트라우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03 프로그램 운영 대상

- 중대재해조사(또는 공단의 정밀기술지원) 또는 점검·감독과정에서 지방관서장(또는 공단의 지역본부·지사장)이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 * 붕괴, 협착·끼임, 충돌, 신체절단 사고, 고층에서 추락한 재해 등을 목격한 노동자가 다수인 사업장
 - * 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트라우마 상담지원
- 기타 사회적 이슈*로 지방관서장(또는 공단의 지역본부·지사장)이 트라우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 대형재해 발생, 노동자의 자살, 노동단체의 응급구호 요청 사업장 등

- 규모별 운영대상 분류

③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시행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③-1 (50인 미만)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 또는 분소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제공 <근로자건강센터 지원>

- * 센터에서 심리상담 등 사업장 지원 및 상담결과 제출
- * 근로자건강센터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는 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공단 근로자건강 증진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트라우마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18년 시행 예정)

③-2 (50인 이상)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지역의료기관(보건소 포함)과 협력하여 노동자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도, 상담 매뉴얼 제공 <고용부 지방관서, 공단 지원>

- * 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트라우마 상담지원
- * 지방관서장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자 건강센터장과 협의하여 센터의 상담능력 범위내에서 결정

2) 운영체계

- 고용부·공단은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운영을 권고하고, 인근 근로자건강센터에 트라우마 관리 의뢰서를 보냄
- 인근 근로자건강센터는 트라우마 상담을 실시하고 노동관서에 트라우마 상담결과를 제출하고, 사업장에 상담 확인증을 발급하고, 필요시에는 의견서 등을 제시

01 운영체계



<근로자건강센터의 산재트라우마 대응모형>

3)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체계상의 어려움

- 근로자건강센터 상담심리사 1인으로 트라우마 상담과 직무스트레스 상담 커버 역부족
- 근로자건강센터 상담심리사의 트라우마 상담 경험 상이함

- 근로자건강센터 상담심리사의 빈번한 이직으로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 양성의 어려움

4. 매뉴얼에서 중점을 둔 심리적 대응시기

- 근로자건강센터와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센터 시범운영시에 중점을 둔 심리적 대응시기는 초기대응기와 중기대응기의 1-3개월간이었다. 긴급대응기와 후기대응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해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① 긴급대응기 : 재해 발생 후 7일 이전

- 목표 : 초기 안정
- 침습적 증상단계
 - * 재해경험 직후 증상이 없다가 다양한 증상이 차츰 심해지는 단계
- 외상 기억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아야 함
-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일 수 있음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
- PTSD와 초기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은 증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체 생존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됨
-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나 상태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실시함
- 신체 부상이 심한 경우 PTSD 관련 증상이 초기에는 없다가 일주일까지 점점 심해질 수 있음
-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최대한 일상생활로 복귀 유도
- 필요한 경우(심한 불안, 불면)에 대한 약물치료 연계

② 초기대응기 : 재해 발생 후 8일-1개월

- 목표 : PTSD, 수면장애,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자살 등 모든 외상 후 스트레스 후유증 예방
- PTSD, 우울증 등의 증상이 고착될 수 있는 단계
-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최대한 일상생활로 복귀 유도
-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 및 상담 필요
-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는 경우 적극적인 대응 필요



③ 중기대응기 : 재해 발생 후 1-3개월

- 목표 : PTSD 증상 완화 및 다른 외상 후 스트레스 후유증 예방
- PTSD, 우울증 등으로 진단될 수 있는 단계
- 필요한 경우 평상시 활동으로 전환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로 복귀 유도
-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는 경우 전문치료 연계하는 것이 중요

④ 후기대응기 : 재해 발생 후 3개월 이후

- 목표 : 모든 외상 후 스트레스 후유증 완화
- 추적 관찰이 진행되는 단계
- 대부분 평상시 활동으로 전환되며 최대한 일상 직장생활로 복귀 유도

5.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트라우마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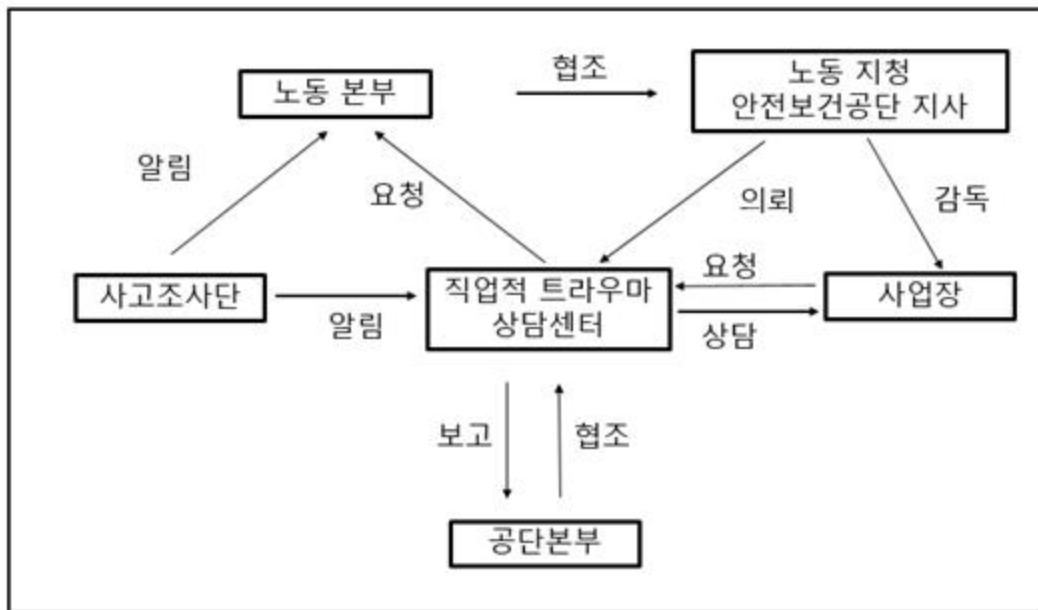
2017년 5월 1일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크레인 재해는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트라우마와 관련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당시 직접적으로 신체적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과 재해 수습과정에 참여했거나, 사건을 목격하거나 기타 직간접적으로 심리적 외상을 입은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적 외상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였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였으나, 전문인력 및 필요한 자원 등에 있어서 공공자원의 한계 등의 여러 이유로 PTSD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2017년 9월 5일 노동부 산업보건과/산재보상정책과/통영지청,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본부/통영지사, 근로자건강센터 경남·대구·전남동부 등 유관기관이 모여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성사되었다. 이 간담회를 통하여 비록 뒤늦었으나 삼성중공업 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외상후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경남근로자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의 자원과 민간의 전문자원의 협력을 통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실제적인 상담은 10월경이 되어서야 경남근로자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6.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2018. 05.08 ~ 12.14)

1) 대구근로자건강센터에서 운영

대구근로자건강센터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 성폭력·성희롱을 경험한 노동자,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노동자, 동료의 자살을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노동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하게 되었다. 전국에 1개소로 운영이 되었으며 운영목표는 대형산업재해 등 충격적인 사건 경험 또는 목격 노동자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 및 업무 복귀 지원, 산업재해 트라우마 커버리지 확대,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의 체계화, 산업재해 트라우마 상담의 네트워크 구축, 근로자건강센터 상담심리사의 트라우마 상담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 등이었다.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의 산재트라우마 대응모형>

2)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 운영의 대상

사망사고규모	2015년	2016년	2017년
1명	810	837	802
2명	13	25	18
3명	4	2	3
4명	1	2	1
6명	1	0	1
10명	1	0	0
계	830	866	825
2명 이상 사망 사업장 수	20	29	23

3)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 운영상의 특성

시범운영의 대표적 활동

✓ 전국 사업장 대상 26건 사고 개입, 700여건 상담 진행

거제00 추락사고(자살)

- 5.2. 사고 발생 / 5.24. 개입
- 경남근로자건강센터와 협업
- 다소 늦은 개입
- 노조와의 충돌 조율
- 휴가 등 조치 이루어짐

인천00전자 화재사고

- 8.21. 사고발생 / 9.27. 개입
- 고용노동부 적극 연계하였으나 사업장의 비협조로 상담개입 늦어짐
- 상담장소 부적합, 상담시간 부족으로 밤 11시까지 상담지원

대전00 폭발사고

- 5.29. 사고 발생
- 6.28. 사건충격척도 전수 조사
- 8.6. 상담 실시
- 전 직원 대상 사건충격척도 실시
- 척도 실시 후 상담개입 늦어짐
- 사고 발생 후 회사 자체 대응 미흡과 늦은 개입으로 노동자의 불만이 높아 상담 시 어려움

제주000 사고

- 10.20. 사고 발생 / 10.25. 개입
- 빠른 개입
- 제주근로자건강센터의 지원요청
- 회사에 대한 분노가 높은 상태
- 회사의 적극적 지원
- 휴가 등 조치 이루어짐

- 전국에 1개소 운영으로 이동시간이 매우 길다.
- 지역별 외부상담사 풀 형성하여 네트워크 구축함이 필요
- 지역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직업적트라우마센터로 의뢰하거나 직업적트라우마센터에서 지역근로자건강센터에 요청하기도 함

4) 산재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의 목적

산업재해는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발생하며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여 사고처리에 급급해 노동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간과된다. 위험한 기계와 기구, 유해물질들을 취급하는 노동자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로 인한 2차적인 재해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산업재해 트라우마를 경험한 노동자가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진행하게 되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노동자들은 재해와 심리적인 외상을 연관시키지 못해 개인적 정신적 질환으로 간주하기 쉽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자 뿐 아니라 목격자, 관리자, 팀원, 교대조원, 안전보건관리자, 대표자,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재해자의 가족 등 주변 여러 사람들이 산업재해 트라우마에 노출될 수 있지만, 목격자나 직·간접 경험자의 심리적인 외상은 간과되기 쉽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산업재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노동자들의 심리적 안정화와 증상의 완화를 위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진료 연계 및 산업재해 요양 신청 과정을 안내하는 등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노동자들에 대해

- ① 직·간접 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하고 안정화
- ② 일상 직장생활 복귀를 도움
- ③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2차 산업재해를 예방
- ④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방
- ⑤ 사건충격정도의 정상화를 최종 확인
- ⑥ 필요시 전문치료를 연계하는 것이다.

7. 태안화력 트라우마 상담 대응

1) 사업의 대상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2018년 12월 10일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업장 (주)한국발전 직원 151명, 한국발전의 재하청기업인 영진 직원 8명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 사업 진행 방법

(1) 트라우마 교육 및 사건충격척도 검사

50분 동안 상담심리사가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설문시 주의 사항을 설명한 후 사건충격 척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2) 위험군 분류

위험군 분류는 사건충격척도 설문(IES-R) 점수 18-24점을 부분외상, 25점 이상을 완전외상으로 평가하였으며, 18점 이상인 경우를 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사건충격척도 검사 상 정상이라도 재해 혹은 재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담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상담인력

재해 후 긴급대응기의 트라우마 교육은 대구근로자건강센터의 상담심리사가 진행하였으며, 개별 심리상담은 국가 트라우마센터, 근로자건강센터(대구, 대전, 서울, 서울서부, 충남), 충남아산인권센터 두리공감의 상담 심리사가 진행하였다.

(4) 위험군에 대한 상담 진행원칙

(주)한국발전과 영진 소속 노동자 전수가 트라우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사건충격척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심리상담 1차 상담은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전화상담은 추적관리 시에 필요에 따라 이용하였다. 원거리 지역이나 상담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각 지역 근로자 건강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과 진료의 경우에는 필요시에 논의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상담대상

- (주)한국발전과 영진의 노동자에 대하여 사건충격척도 검사결과 PTSD 위험군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사건충격척도 점수 18점 이상인 부분외상 이상의 위험군으로 분류된 이들과, 재해 혹은 재해자와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전문가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 사고의 수습과정과 관련이 있었던 서부발전 직원 5명에 대하여 트라우마 상담 의뢰를 받고 트라우마 개인 상담을 시행하였다.
-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의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소속 노동자 5명과 신흥기공 노동자 3명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충격척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별도로 충남근로자건강센터를 내방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다.

(6) 상담공간

교육과 상담은 서부발전의 교육장, 서부발전의 의무실, (주)한국발전의 상담실, 태안의료원의 장례식장, 태안의료원의 상담실 등을 이용하였고, 개인별 상담가능한 독립된 공간을 활용하였으며, 가능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노조의 조합원의 경우에는 주로 태안의료원을 이용하였고, 그 외의 경우에는 회사의 상담실을 주로 이용하였다.

(7) 산재요양 신청 안내

산재요양 신청 등의 절차나 방법에 대한 안내는 사고대책위를 통하여 안내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필요한 경우 산재요양 및 임시건강진단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3) 사업의 진행 경과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서 태안 서부발전에 산재트라우마 진행 협조요청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서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에 트라우마 상담 협조요청 (2018. 12. 13)
- (일정협의) 태안서부발전 안전과장, 직업적 트라우마 센터 3명(2018. 12. 14)
- (1차 교육 및 사건충격척도 검사)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부센터장, 상담심리사 등 3명)
- 한국발전 직원 80명에 대해 회사 내 교육장에서 안정화 교육 실시
- 77명이 사건충격척도 검사 실시
- 사건충격척도 검사를 실시한 77명 중 상담 대상자 37명 선정 (12.14)
- (1차 상담) 상담대상자 37명 중 8명 상담실시 (12.17)
- (대책위에서 문제제기) 교육 장소 및 상담순서 등에 대해 노동자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여, 전반적인 문제를 대책위와 협의하기로 함. 2차 교육 및 사건충격척도 검사는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실시하기로 협의함. 상담계획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대책위와 상담전

문가들의 회의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대책회의를 시행하기로 함

- (2차 교육 및 사건충격척도 검사) 태안의료원 장례식장 2층 2분향실에서 32명에 대해 교육 및 사건충격척도 검사 실시 (12. 18. 11시)

- (대책회의) 근로자건강센터(대구, 서울) 3명, 국가트라우마센터 4명, 천안아산인권센터 두리 공감 3명, 대책위 1명 참석. 심리상담 대상범위, 상담장소, 향후 일정 등 협의.

- (2차 상담) 태안의료원 상담실과 장례식장 가족실을 이용하여 45명에 대하여 상담 실시 (12.19-20)

- (3차 교육 및 사건충격척도 검사) 한국서부발전 안전체험교육장에서 28명에 대해 교육 및 사건충격척도 검사 실시 (12. 27. 17:00)

- (3차 상담) 태안의료원 상담실과 한국서부발전 내 상담실을 이용하여 30명 상담 실시 (12.26~27)

- (4차 교육 및 사건충격척도 검사) 한국서부발전 안전체험교육장에서 18명에 대해 교육 및 사건충격척도 검사 실시 (2019. 01. 10. 17:00)

- (4차 상담) 한국서부발전 내 상담실을 이용하여 19명 상담 실시 (2019. 01. 08, 01. 10)

- (5차 상담) 한국서부발전 내 상담실을 이용하여 6명 상담 실시 (2019. 01. 18, 01. 25)

※ 세부내용 33~34쪽 트라우마 중재 프로그램 세부 운영경과 참조

4) 사업 결과

(주) 한국발전 전체 직원 및 영진 소속 노동자 전수에 대하여 트라우마에 대한 교육 및 사건충격척도 검사를 시행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위험군을 선별하고자 하였다. 서부발전 소속 5명의 노동자에 대하여 사건충격척도 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였다. 모두 한국인 노동자였으며 외국인은 없었다.

(1) 트라우마 교육

(주)한국발전기술 직원과 영진 소속 노동자에 대하여 트라우마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

(2) 사건충격척도 설문

PTSD 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설문(IES-R)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8개의 침습 증상, 8개의 회피 증상, 6개의 과각성 증상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정상 18미만, 부분외상 18~24, 완전외상 25이상으로 평가하였다.

<트라우마 중재 프로그램 세부 운영경과>

시 간	내 용	담당	참여인원	비고
2018. 12.14	○ 안정화 교육 설문 응답방법 설명 설문 실시 및 수거	대구	79명 (상담대상 37명)	2팀
2018. 12.17	○ 개별심리상담 실시	대구	8명	2팀 중 고위험군
2018. 12.18	○ 안정화 교육 설문 응답방법 설명 설문 실시 및 수거	대구	32명	1팀
2018. 12.19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태안의료원	3명	
2018. 12. 19 ~ 20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국가인권위	44명	1팀, 재하청의 정비4명 청소 1명대상
2018. 12. 20	○ 개별심리상담 실시	충남	7명	신흥기공 한전산업
2018. 12. 24	○ 개별심리상담 실시	충남	1명	신흥기공
2018. 12. 26	○ 개별심리상담 실시	서울, 충남 대구	14명	
2018. 12. 26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5명	1차
2018. 12. 27	○ 개별심리상담 실시	서울강서	5명	원청(서부발전)
2018. 12. 27	○ 개별심리상담 실시	충남, 대전 대구	11명	
2018. 12. 27	○ 안정화 교육 설문 응답방법 설명 설문 실시 및 수거	대구	28명 (상담대상 8명)	(25명 사건 충격척도검사)
2018. 12. 27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진행안함	1차
2018. 12. 28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1차
2019. 01. 03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9명	2차
2019. 01. 03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태안의료원	1명	
2019. 01. 04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5명	2차
2019. 01. 08	○ 개별심리상담 실시	대구, 충남	10명	(한국발전)



시 간	내 용	담당	참여인원	비고
2019. 01. 08	○ 정신건강의학과진료	녹색병원	1명	
2019. 01. 10	○ 개별심리상담 실시	대구 서울서부	9명	(한국발전7명 서부발전 2명)
2019. 01. 10	○ 안정화 교육 설문 응답방법 설명 설문 실시 및 수거	대구	18명	(전원 정상)
2019. 01. 10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2명	3차
2019. 01. 11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4명	3차
2019. 01. 15	○ 정신건강의학과진료	녹색병원	1명	
2019. 01. 16	○ 정신건강의학과진료	태안의료원	1명	
2019. 01. 17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4명	4차
2019. 01. 18	○ 개별심리상담 실시	대구	4명	
2019. 01. 18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5명	4차
2019. 01. 25	○ 개별심리상담 실시	서울서부	2명	

(3) 사건충격척도 설문결과

사건충격척도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155명이었으며 자기기입식으로 시행되었다.

(4) 상담실시결과

사고가 발생한 1팀에 대하여 전수상담이 이루어졌고, 사건충격척도 검사결과 부분외상과 완전 외상에 대하여 상담이 이루어졌다. 1차 상담을 실시한 노동자는 총 89명이었다. 1차 상담을 실시한 대상자 중에서 사건충격정도가 남아있거나, 상담사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2차 상담을 실시하였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상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5) 병원 진료 및 치료 연계 등

4명에 대하여 태안의료원, 녹색병원 등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연계되었고, 1명이 산재신청을 하였다. 1명에 대하여 휴식과 업무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어 소견서 회신함

5) 심리 상담에 대한 질적 분석

(1) 외상 후 스트레스와 관련한 주요 심리적 증상과 반응

- 불안감-사고반복 가능성, 내가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불안
- 분노감-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에 대한 분노. 불충분한 회사 대응에 대한 분노
- 안타까움-얼굴만 아는 사이지만 벌어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 수치감-열악한 노동조건이 공개는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과 연결
- 수면 어려움, 주의집중 어려움으로 업무몰입 떨어짐
- 재해처리가 빨리 끝나면 좋겠음. 안타까운 일이지만 처리 지연으로 자신의 업무진행에 걸림돌이 됨. 생각하고 싶지 않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음-회피적 태도

- 중압감, 부담감, 신체적 피로: 조사, 대책 마련 등 사고 관련 업무와 자신의 현업이 가중되면서 발생
- 분노감, 좌절감, 대인관계 및 조직에 대한 불신: 본인들의 요구(평상시 작업안전이나 처우 관련 뿐 아니라, 사고 조사와 대책수립 과정 포함)를 회사에서 충분히 듣지 않음
- 안타까움 - 희생자에게 느끼는 마음
- 수면장애 - 사고 장면이 떠오르거나, 사건처리 및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책임 관련한 불안감, 생각에 몰두하기 등
- 회피 - 사건관련 단서가 될만한 것들을 피함
- 우울감, 무력감 - 트라우마로 인한 충격, 조사 참여, 본연의 업무가 혼재되어 일상성이 깨졌지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회사의 지시만 따라야함), 언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음

- 일반적으로 회피와 침습 반응이 가장 많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대부분 사라짐. 침습보다는 회피 반응이 더 오래가는 경향이 있음. 지속적으로 회피 반응을 보이는 경우 대개 심리치료 효과가 더딤

- 심리적 증상 : 두려움, 불안(안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우울, 혼란(추후 회사 상황 및 업무에 대한 염려), 자책감(동료의 죽음에 비해 현재 자신이 생존자라는 사실,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다는 사고등), 공허감(갑작스런 주변인의 죽음 경험-일반 사고와 직장내 산재 사고는 다르게 인지됨), 사고자에 대한 그리움(사망전 일상을 함께 했던 기억이 자주 생각남),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
- 신체적 증상 : 수면장애, 악몽, 눈물, 멍함, 섭식의 어려움(소화 어려움) 등



- 회사에 대한 분노
- 나 혼자 이렇게 충격이 큰가 하는 마음에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 휴가 등 처우에 대한 불만
- 안타까움 : 희생자와 사고처리 과정에 대한 안타까움
- 수면장애, 불안감, 공포, 회피
- 죄책감(사고 관련자, 친밀도 높은 사람)
- 구성원 간 트라우마 증상발현 정도와 회복 수용정도 및 이해도 차이로 인한 갈등발생

(2) PTSD 증상을 지속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

- 사망자를 연상시키는 장소, 관련업무 등. 신문방송을 피하려 함

- 회사의 태도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환멸감 - 사건과 관련한 정서(놀람, 공포 등)가 아닌 2차적인 정서(분노, 좌절감 등)에 몰두하게 하여 사건 관련 정서적 접촉과 처리가 어렵게 만들
- 사건관련 정서에 대한 회피 : 빨리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사건과 관련한 정서에 충분히 접촉하지 못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김
- 반복되는 사고관련 자료 접촉 : 문서, 사진, CCTV 등 필요 이상의 자료열람 반복 때문에 사고 관련성이 낮았던 노동자들의 심리적 충격도가 높아짐. (목격자, 시신 수습, 희생자와 직업적 관계가 없었음에도.)
- 트라우마 상담 참여시 동료들의 시선 : “○○가 상담받아요?”, “그렇게 많이 힘든가?” 등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심리적 현상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조직 문화

- 사건 이후의 조사 등으로 기숙사에 머물며 가족과 친구들과 접촉이 제한되는 경우
- 작업 중지 상황임에도 회사에 계속 출근하며 사건 현장 주변에 있게 되어 심리적인 불안정함이 계속되는 경우

- 사고당시의 기억(직간접적) : 직접 목격자의 경우 가장 힘들고, 간접 목격자라 하더라도 같은 소속의 직원으로써 충격이 상당하며, 충격완화를 위한 장치(적절한 상담개입 등)가 없는 경우 트라우마 증상은 지속되고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고가 발생한 현실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적 반응
- 현재 상황과, 추후 예측 불가능한 상황(회사상황, 업무복귀 가능여부, 공정재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한 불안감
- 주변의 인적자원(가족, 친구, 동료 등)을 활용하지 않고 혼자 견디고자 하는 태도

- 회사의 태도 : 은폐, 축소, 시설개선불만, 특히 사고 처리와 공정재개에만 신경쓰며 직원들의 심리적 불안감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분노 발생 등
- 트라우마에 대한 낮은 이해도 : 정상적인 반응임을 알지 못하여 자신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표현하지 못함
- 사고담당자 등 사고처리 과정에서 사진, CCTV 등 반복되는 사고관련 자료 접촉
- ※ 특히 관련 업무 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때 상황 상 어쩔 수 없이 담당하게 된 노동자인 경우 분노와 충격이 점점 상승하는 경우 발생
- 주변사람들의 시선과 가볍게 내뱉는 말들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 ‘평소에도 약하다 했다.’ ‘아직 힘들어?’ ‘너는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왜?’ 등

(3) 당사자들의 요구와 제안

- 노동조건 개선-업무노력에 비례하는 보수,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

- 사건처리 관련하여 한 쪽 채널로만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달라.
- 평소에 안전 대책 및 산업재해 보상 관련하여 노동자가 마음 놓고 일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

- 트라우마 상담 절차상의 여러 가지 결정에 있어 내담자의 의사 반영이 미흡한 경우가 있음
- 아무래도 회사 주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내담자 신변이 비밀 보장되지 않아 트라우마 상담을 신뢰하지 못하기도 함. 회사와 독립된 공간에서 회사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상담이 진행되길 원함. 내담자에 따라서는 사건 자체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심리상담을 원하지 않기도 함. 비정규직에 대한 정치적 수단으로이용하는 듯 한 민주노총과 미디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도 함

- 사업장측의 조속한 대처, 현재의 상황과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 등
- 업무상황에서 하청 직원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
- 누락된 직원 없이 심리상담 진행(트라우마 교육이 끝나고 함께 참여하지 못한 동료의 상담가능 여부 문의 및 직접 통화 연결을 부탁하기도 하였음)
- 일정기간 안정을 취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 회사별(원청, 하청, 하도업체) 소속 근로자에 따라 상이한 요구 할 수 있음 (휴식기간 요청, 심리적 안정, 업무복귀 등)

- 회사가 직원들의 심리적 부분을 먼저 생각해줄길 바란다.
- 상담실이 이동하기 편한 곳, 눈에 띄지 않는 곳이면 좋겠다.
- 지속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걸핍기 식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 치료비용, 상담을 위해 오고가는 차비 등도 고려해 달라.
- 평소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귀를 기울여 달라

(4) 상담전문가의 제안과 의견

- 직접 목격자가 아님에도 일부 노동자는 급성스트레스증상 보임. 노동자가 원한다면 개별적으로 상담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사측 관리 절차 필요
- 재해 트라우마 관리에 있어서 공단의 행정적 개입(검사결과 요구 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 본인에게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 모색(휴가, 상담, 업무재배치 등)

- 사건처리에 급급하여 고통 받는 ‘사람’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또 다른 산업재해를 발생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조사 받고 대책 마련에 힘쓰는 사람들의 노동 강도와 양을 조절해줄 것
 - 사건의 영향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빨리 나아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
 - 책임 소재 따지기에 몰두하면서 하청, 원청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돌봄의 공백이 생김을 주지하고 유의할 것
 - 상담심리사의 출장 유류비, 통게이트 비용, 초과근무 등을 신경 쓰느라 심리상담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것
- 평상시에 관리감독자들 만이라도 ‘심리적 응급처치’와 같은 교육을 통해 심리적 충격에 대한 예방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이나 기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무엇보다 초기에는 사건 현장과 사건을 연상시키는 사람과 장소 등과 떨어져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함
- 회사와 분리된 공간에서 내담자 주도적으로 상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심리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소속근로자에 대한 유연하고 섬세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원청 및 근로자 소속 하청 업체에서 사고처리의 중요성과 더불어 근로자의 심신안정에 관심을 가지고, 근로자들이 충분히 예민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적절한 시기에 상담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더불어 장소 및 사전준비 등에 신경 쓸 필요 있음. 일정기간 동안 사고발생 장소와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한 범위의 근무환경 개선 이후 업무복귀. 신속한 업무복귀를 강요하지 않고 근로자의 상태를 고려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상담진행에 통일성이 필요하고 상담사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업장에 대한 제안
 - 평소에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함 :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참여 등으로 트라우마와 심리상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거부감 없이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고처리와 공정재개에 급급하여 직원들의 심리적 충격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것은 더욱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신뢰가 무너져 장기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사고처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충격도 있으니 사고 처리 과정에 상담 실시를 병행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사고 처리 후 반드시 사고처리로 인해 과부하가 발생한 담당자에 대해서 차후 상담진행과 휴가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상담사의 안전 확보 고려

(5) 상담전문가의 소감

-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미흡하나마 구조적개선과 법령개정 등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태안 사고 이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유사한 사망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사회적으로 조명 받지 못하고 지나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트라우마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갖추고 지역별로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1개 전문센터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일하는 것은 실무자에게 지나친 업무부담을 줍니다. ‘관리’보다는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일해주신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 여러분에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 언론과 정치권에서 떠들어대는 것과 달리, 제가 만난 분들은 그저 순수하고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노동자의 고통이 온갖 이권 다툼에 가려지는, 그런 멍청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청이든 하청이든 힘있는 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노동자 목소리를 가버이 여기고, 노동자가 생존이 걸린 안전 및 보상에 대해 말하기를 머뭇거리게 만들어 또 다른 산업재해가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직접 트라우마 상담에 참여하지 않고 사고를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원청 또는 희생자와 관련성이 낮은 노동자들은 “괜찮을 것이다, 심리적 충격이 낮을 것이다”고 판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참여해보니, 사고와 밀접성, 관련성이 낮은 노동자라도 사고 이후 모든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마음과 조직의 분위기에 광범위한 영향이 미쳐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2차, 3차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사업주와 관리자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심리적 충격이 높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관리자들이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받고, 회사와 노동자 모두 트라우마 사건에서의 회복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태안 사건 전후로도 다른 많은 산재 사고가 있었음. 태안이 주목을 받은 점은 긍정적이면서도 아쉬운 면이 있음. 당시 다른 산재 재해자 주변인들이 어떻게 느꼈을지도 한번쯤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음

- 본 사고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심신은 매우 지쳐있는 상태로 보였으며, 사고 직간접 목격자, 친분도, 사망 전 일상생활에서 고인과 접촉한 경험 등에 따라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동료의 죽음으로 충격이 큰 것으로 보였음. 근로자분들과의 트라우마 상담상황은 무리없이 진행이 되었으나, 개입 및 진행 측면에서 이전 산업재해 트라우마 상담보다 진행과 접근이 민감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됨. 트라우마 상담이 다소 급하게 투입되어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었고, 다소 경황이 없기도 하였으나 추후 지속적으로 사업장 및 대책위측, 노동부 근로감독관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조율하며 최대한 누락된 인원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여러 기관이 관련하여 협업하면서 약간의 입장차가 있을 수 있고,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민감한 상태라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보다는 트라우마 상담의 본질에 맞추어 근로자가 겪는 현재의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였음. 상담에 참여한 근로자분들은 트라우마 심리안정화 교육 및 트라우마 상담을 통하여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탐색하고 표현하며 감정을 해소할 수 있었고 현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욕구를 자각하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하였음. 회사측에서는 소속근로자들이 충분히 트라우마를 있는 그대로 보고, 회복할 수 있도록 경직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동료들간에도 트라우마 증상에 따라 조직원을 판단하지 않으며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함. 사고 관련 사항들을 무조건 극복하고 빨리 잊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해 나가는 과정이 다소 더디게 여겨질 수 있지만 트라우마 극복, 안전한 업무복귀와 더불어 추후 사고를 예방하여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원청의 사고처리에 대해 가벼이 여기는 태도와 상담을 받기 위해 용기 내어 오는 부하직원들에게 상사직원들의 가벼운 언행에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그들의 태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 3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원청에서 보상해주면 되지 란 안일한 생각에도 착잡함을 느꼈습니다.
- 노동자 개인 또한 트라우마에 대해 무조건 괜찮다고 숨기는 경우나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상담을 받아보니 괜찮은 것이 아니었구나를 알고 가는 경우 등 트라우마에 대해 무조건 괜찮아질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담 와보니 필요하구나를 느낀 후자의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워선의 눈치, 다른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상담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상당하다고 예상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담사들과 국가기관과 사업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여겨 개선해 나가 하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 저 뿐 아니라 혼자 태안으로 상담을 하러 오고가는 상담사들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혼자 다니는 상담사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 또한 고용불안과 외주화의 입장에 놓인 사람들인데... 란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먼 거리와 늦은 시간 이동 중에 고속도로에서 불미스러운 사고 등을 당하게 되면 그 누가 나의 죽음에 책임을 져 줄까? 우리 가족만 고통 속에 살겠구나... 하는 맘이 들어 이 일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8. 산업재해 트라우마의 특성

재난이란 천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간에 시간적·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재산, 인명 및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상사건을 말한다(사회복지 용어사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 말하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 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



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산업재해(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는 여타 트라우마 경험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진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사고현장을 제거할 수 없고 매일 출근하는 곳이어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사고현장에 재노출 되고, 재경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재해 트라우마는 자연재해나 사고성 재해와는 달리 책임주체가 분명하다. 재해 발생을 막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고, 개인별로 충격도·대처방법·회복기간 등에도 크게 차이가 있어 노동자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특히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 노동자들은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아 그들의 심리적 트라우마 상태를 동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회사로부터의 낙인도 우려하여 트라우마를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달리 산업재해는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발생하며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지만 사고 처리에 급급해 노동자의 심리적 부분이 간과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자들이 다른 원인에 의한 부상자들에 비해 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직장으로의 복귀가 더 안 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례보고는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산업재해를 경험한 노동자가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진행된다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가정생활에도 그 영향은 불가피하게 이어지게 된다.

산업재해 발생 시 정신적 피해 범위도 매우 넓다. 재해자 뿐 아니라 응급 처치자, 목격자, 팀원, 사적관계, 관리자, 교대자, 안전보건관리자, 대표자,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재해자의 가족 등 주변 여러 사람들이 산업재해 트라우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 트라우마 특징을 고려해 볼 때 트라우마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사고 현장이 철저히 조사되고 개선되었다는 것을 노동자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개인 간 충격반응과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서로 돕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회사의 임원 등 관리자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들을 관리해야 한다. 셋째, 의무적으로 전(全)노동자가 상

담·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나약하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9. 평가

1) 고용노동부 산재 트라우마 매뉴얼에 보완되어야 할 점

- 산업재해 트라우마 매뉴얼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심리적인 안정화·정상화를 초점으로 만들어졌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여 산업재해를 경험한 노동자가 심리적 외상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 재해발생 후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어떤 지원이나 조치가 필요할 지에 대한 경험이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다.

- 재해발생 후 8일 - 3개월 정도의 초, 중기 대응을 위주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으며, 3개월 이후의 후기 대응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대책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초기 대응으로서의 트라우마 교육의 상세한 내용, 이후의 심층 상담 등의 기법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 현재는 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가 전국에 1개소로 진행되고 있어 근로자건강센터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에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 매뉴얼은 산업재해 목격자의 트라우마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향후 직업적 트라우마 관리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매뉴얼 적용과정에서 현장 개입 전문가들이 느끼는 고충이나 어려움

(1) 인식부족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 고용부·공단역의 역할, 사업주·관리자의 인식, 노동자의 인식 :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업주와 관리자의 인식부족이다. 고용부나 공단에서 트라우마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트라우마 상담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인식이 없는 사업주나 회사의 관리자들이 적극 협조를 하며, 상담 후에는 이러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만, 고용부나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연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나 회사의 관리자는 이런 상담이 필요하지 않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필요 없다고 말하다가도 상담을 하고 나면 자신에게 매우 필요하였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인식부족은 트라우마 상담을 연계하는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되지만,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트라우마 상담에 시간과 공간, 상담대상자 선정 등의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사측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 인식이 부족한 관리자는 직접 목격자가 아닌데도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의아해 하고, 노동자에게 사건발생 당시 없었는데 뭐가 마음이 힘드냐고 말하기도 한다. 상담을 받는 사람을 나약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근로자건강센터가 실적 때문에 상담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2차 상담, 3차 상담 등 추적 상담을 시행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일이다. 전수를 2차, 3차 상담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회사에서 시간적 손실 등으로 반기지 않으며 상담인력도 부족하다.

(2) 트라우마 전문상담사의 부족

-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의 부족 : 현재 직업적 트라우마를 관리하도록 시범운영사업을 하는 곳은 대구 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이다. 전국에 1개소인 조직이다. 전국을 다니는 과정에서 원거리에서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 개입은 하지만, 이후 추적관리가 어렵다. 이를 해결해 줄 지역의 트라우마 상담센터가 제한적이다.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에 회사의 비용으로 상담을 지속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 트라우마 전문상담사의 부족 :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상담사들의 인력도 제한적이다.

(3) 트라우마 상담제공 사업장 규모의 구분

- 매뉴얼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트라우마 상담을 제공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지역의료기관(보건소 포함)과 협력

하여 노동자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도, 상담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트라우마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구별하는 것은 근로자건강센터의 상담사에게도 혼란을 주고, 사업장으로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왕좌왕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 초빙 시 트라우마에 맞춘 상담이 진행되지 못한 예도 발생하였다.

(4) 트라우마 상담이나 직무스트레스 상담의 구조적 문제

- 트라우마 상담이나 직무스트레스 상담을 회사에서 고용한 상담사에게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부상담기관에 의뢰하는 경향이 많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개입되지 않으면 개인상담, 개인적인 대처방법에 치중된 상담을 할 수 밖에 없다.
- 트라우마와 직무스트레스 해결에 대한 회사의 긍정적 태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3) 태안 화력발전 트라우마 사업수행의 긍정적인 측면

(1) 산업재해 트라우마 상담은 특성상 회사 협조나 조율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측면이 있다.

- 태안의 경우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산업재해 트라우마상담에 대한 시민대책위의 요구 및 조율로 상당부분 해소되었던 부분이 있다.

(2)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후에 발생했던 여러 문제의 일부가 극복되는 부분이 있었다.

구분	삼성중공업크레인사고	태안서부발전사고
계약형태	하청형태로 공사기간동안 일하고 공사 후 계약이 만료되는 형태	하청이지만 고정된 사업장에서 일함
비용	상담비용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실제 상담 진행에 어려움을 겪음	국가트라우마 센터, 두리공감,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협업으로 진행
상담시기	사고 1개월 후에 설문조사 시행하였으나 실제 상담은 5개월이 지나서야 상담	사고 4일 후 1차 교육 개입 (트라우마 상담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정부부처 역할	트라우마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협조부족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권고

구분	삼성중공업크레인사고	태안서부발전사고
시민대책위 역할	사고 모듈에서 일하던 1,623명 중 923명이 퇴사하여 트라우마 관리에 어려움을 겪음	제조업으로 고정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작업 중지, 휴업 등에 역할을 하고 트라우마 상담일정 등 조율 가능
주요문제	생계, 고용의 문제가 크게 작용	불안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됨
산재신청상 어려움	산재신청과정에서의 비용, 절차, 진단 등 트라우마와 관련한 산재신청 장벽이 작용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서 얻은 경험으로 산재신청 장벽이 낮아짐 (그러나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산재신청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산재 후 트라우마 산재보상에 대한 절차와 규정마련이 필요함)
사회적 지지	업종 특성상 퇴사자 많고, 직장이거나 대책위 등의 사회적 지지가 어려운 구조임	원청(?)의 일부 트라우마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었으나, 사측과 대책위의 지지가 힘이 되었음
기타	노동자들 퇴사 등 지역에서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음 →타지역 노동자는 타지역 연계	국가트라우마 센터나 근로자건강센터가 원거리에 있어 트라우마 상담이 어려움 →지역 트라우마 상담센터(두리공감)의 역할이 중요

4) 태안 트라우마 사업 수행과정의 제한점 검토 및 평가

(1)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의 경험부족

- 대형재해 발생시, 하청업체의 재해발생시의 대처방안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다. 12월 14일에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를 방문하였으나, 사업장의 원하청구조, 재해 사업장, 재하청구조, 재해공정, 재해사업장의 재해팀원, 수습자, 직원 수, 노조 등등 기본적인 전체적인 정보파악에 미숙하여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사고 후 1주일이내의 긴급 대응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나 사고 라인 노동자 등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부분 등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였다.

(2) 대형재해에 대한 대응 경험 부족

- 트라우마 상담 개입 범위, 체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
- 사고 직후(2일 이내의)의 개입, 후기 이후의 개입, 현장복귀의 시점 등에 대한 고민이나 논의가 필요
- 향후 어느 시점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점검 혹은 잔존 증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3)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소통과 연계가 필요

- 정신건강의학과와의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직업적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재트라우마와 산재보상 신청에 대한 이해, 산재보상 절차에 대한 이해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상병과 증상에 대해서만 접근하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트라우마 상담을 수행한 지역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부족

- 공공자원으로서 지역 정신보건복지센터와 근로자건강센터가 있으나, 전문성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지리적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었음. 대형재해 혹은 심각한 재해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가 트라우마에 노출된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5) 지역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요구됨

(6) 트라우마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

이번 태안 트라우마 상담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의 대응과 트라우마 의뢰는 비교적 시급히 진행되었다. 이것은 이전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 시범운영을 하면서 경험과 인식이 있던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트라우마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동료에 의한 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향후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10. 제언

- 트라우마 관리의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교육하고 양성하고, 트라우마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타의 트라우마 센터 및 전문 진료와



연계할 수 있는 직업적 트라우마 센터가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트라우마 센터는 3개월 이내의 위기대응은 일정정도 담보할 수 있으나, 이후 지속적인 관리나 심층면담, 재노출 치료 등에 대해 담보하기 어렵다.

- 사고현장에서의 위기대응에 대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사업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트라우마 상담사들이 사고현장에 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사고 후 7일 이내의 긴급 대응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재해의 규모가 큰 경우 민간의 전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은 근원적으로 업무상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다. 심리상담 등의 개입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 등에 대하여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PTSD에 대한 산재요양 업무처리 지침을 개선하여 요양승인 절차의 장벽을 낮추고, 재해자에게 실제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점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트라우마 상담에 있어서 상담심리사의 상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회사, 동료, 가족 등의 사회적 지지이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성실한 후속조치로 향후의 안전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혹은 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의 협조에 의한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은 다른 부처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을 구축, 활용할 수 있다는 매우 훌륭한 장점이 있다. 사업장에 뻗어있는 노동부와 공단의 발은 매우 귀중한 체계이다. 산재 트라우마에 대한 고용부, 안전보건기관 등 행정기관의 인식은 매우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트라우마 상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다, 산재트라우마 상담은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인식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의 노동자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투자가 인색하다는 점이다. 현

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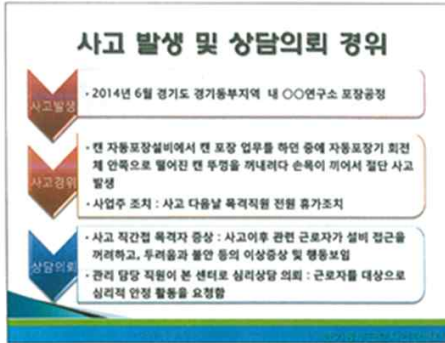


산재트라우마 관리 현황과 과제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부센터장
양 선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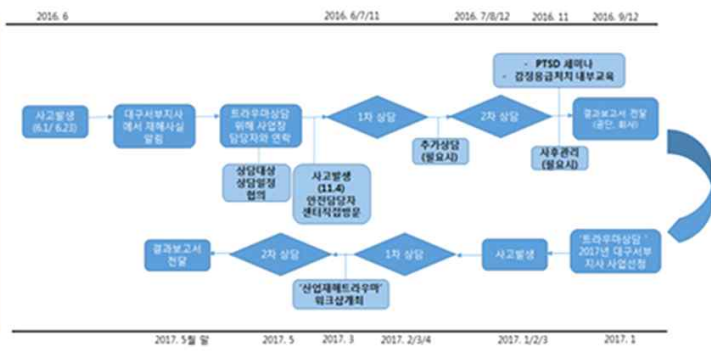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경과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의 트라우마 상담 (2014년 6월)



대구 트라우마 상담 진행경과

- 2016년 6월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 에서 산재 사망사고 알림 문자 전송
-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후 트라우마 상담 개입 논의
- > 서부지사는 사업장에 트라우마 상담 권고
- > 사업장 정보를 대구 근로자건강센터에 제공
- > 사업장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트라우마 상담 실시
- > 2016년 하반기 동안 3개 사업장에 트라우마 상담 실시
- >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와의 협업 - 2017년 산업재해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 2017년 5월 1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발생 - 6명 사망 25명 중경상
- 2017년 6월 12일 - 경남근로자건강센터 중심으로 사건충격척도(IES-R) 검사지를 기본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859명)- 실제 대상자는 1,6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
- 2017년 7월 5일 - 안전보건강조주간 - 대구센터가 근로자건강센터 우수 사례로 "산재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발표
- 2017년 9월5일 - 노동부에서 크레인사고 트라우마 관리 위해 회의
- 2017년 9월 - 근로자건강센터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시범운영
- 2017년 9월 이후 2차 설문조사 및 심리상담 진행
- 2017년 11월 - 전국근로자건강센터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5월 8일 - 2018년 12월 14일 -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 시범운영센터

트라우마 이론적 배경과 상담에 대한 탐색

1. 근로자의 심리건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세미나 개최(2016. 11)
2. 감정 응급처치에 대한 내부 교육(2016. 11)
3. 전국근로자건강센터 대상으로 산업재해트라우마 워크숍 개최(2017. 03)
4. 트라우마 심리지원 전문가 학교 : 전국근로자건강센터의 트라우마 상담 워크숍(2017년 9, 11)
5. 트라우마 심리지원 기본과정 : 전국근로자건강센터 트라우마 상담워크숍(2018. 02)
6. 전국근로자건강센터의 트라우마상담 워크숍(인지행동치료 중심으로) (2018. 10)
7. 이주노동자 트라우마 상담에 대한 모색 : 자체 워크숍(2018. 8)
8. 전국근로자건강센터 트라우마 공개사례발표 및 슈퍼비전 실시(2018. 11)
9. 전국근로자건강센터 동료 사례회의(2018. 11)

고용부 트라우마 매뉴얼

2017. 9.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코리아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2017. 9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CONTENTS

I 도입 필요성	4
II 운영 개요	8
III 운영 체계	11
IV 상담절차 및 방법	
▣ 상담대상	18
▣ 상담유형	19
▣ 1차 개인상담	24
▣ 2차 개인상담	28
▣ 추적관리	29
▣ 집단상담	29
V 트라우마 상담 시 기관 고려할 점	32
VI 상담사례	34
부록	39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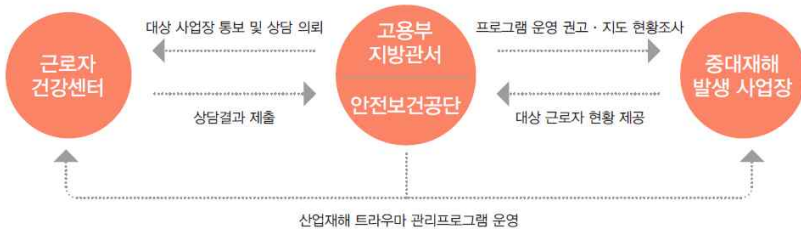
연 도	전체 노동자수	재해자수(명)				재해율 (%)
		사망	업무상사고 사망자	부상	50인 미만 사망자	
2010	14,198,748	2,200	1,114	89,459	1,299	0.69
2011	14,362,372	2,114	1,129	84,662	1,314	0.65
2012	15,548,423	1,864	1,134	81,955	1,158	0.59
2013	15,449,228	1,929	1,090	82,803	1,116	0.59
2014	17,062,308	1,850	992	81,955	1,078	0.53
2015	17,968,931	1,810	955	80,999	1,062	0.50
2016	18,431,716	1,777	969	82,780	1,077	0.49

산재트라우마 관리사업의 목적

- 직·간접 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 완화
- 일상 및 직장생활 복귀 도모
- 2차적인 산업재해 예방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 사건충격정도의 정상화를 최종 확인
- 필요시 전문치료 연계

근로자건강센터 트라우마관리 모형

01 운영체계



근로자건강센터 트라우마관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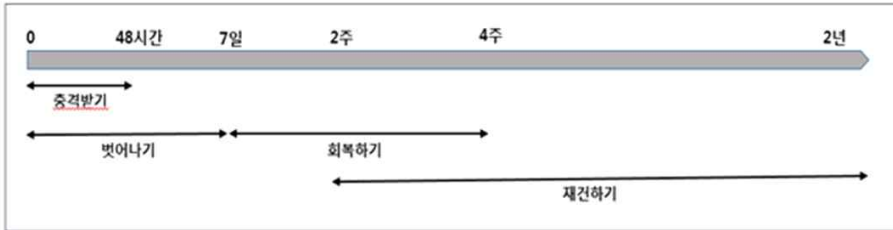
• 운영대상

- 지방관서(고용부나 공단)에서 트라우마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 사회적 이슈로 지방관서에서 트라우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③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시행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 ③-1 (50인 미만)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 또는 분소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제공 (근로자건강센터 지원)
 - * 센터에서 심리상담 등 사업장 지원 및 상담결과 제출
 - * 근로자건강센터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는 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단 근로자건강 증진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트라우마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18년 시행 예정)
- ③-2 (50인 이상)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지역의료기관(보건소 포함)과 협력하여 노동자의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도, 상담 매뉴얼 제공 (고용부 지방관서, 공단 지원)
 - * 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트라우마 상담지원
 - * 지방관서장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자 건강센터장과 협의하여 센터의 상담능력 범위내에서 결정

재해발생 후 시기별 심리적 대응변화



- ① 긴급대응기 : 재해 발생 후 7일 이전 — 집단교육
- ② 초기대응기 : 재해 발생 후 8일~1개월 }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상담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기
- ③ 중기대응기 : 재해 발생 후 1~3개월
- ④ 후기대응기 : 재해 발생 후 3개월 이후 — 대부분 평상시 활동으로 전환되는 시기

02 수행체계



근로자 건강센터 트라우마 상담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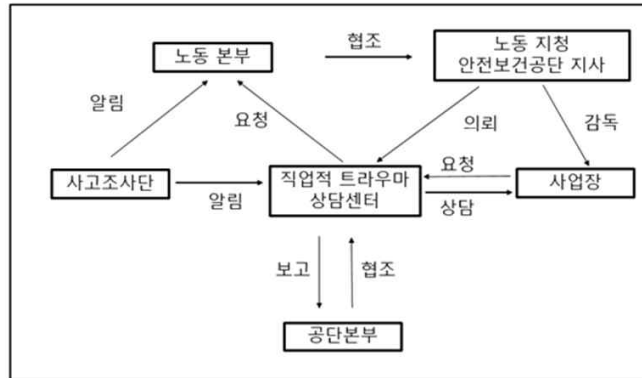
- 근로자건강센터 상담심리사 1인 - 직무스트레스상담과 트라우마 상담 커버하기에 역부족
- 상담심리사의 트라우마 상담 경험 상이함
- 상담심리사의 빈번한 이직으로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 양성 어려움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 2018년 5월 8일 2018년 12월 14일
- 대상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
 - 성폭력·성희롱을 경험한 노동자
 -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노동자
 - 동료의 자살을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노동자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 등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의 산재트라우마 대응모형>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사망사고규모	2015년	2016년	2017년
1명	810	837	802
2명	13	25	18
3명	4	2	3
4명	1	2	1
6명	1	0	1
10명	1	0	0
계	830	866	825
2명 이상 사망사업장수	20	29	23

목표 : 사고 25건에 개입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시범운영의 대표적 활동 ✓ 전국 사업장 대상 26건 사고 개입, 700여건 상담 진행



거제00 추락사고(자살)

- 5.2. 사고 발생 / 5.24. 개입
- 경남근로자건강센터와 협업
- 다소 낮은 개입
- 노조와의 충돌 조절
- 휴가 등 조치 이루어짐

대전00 폭발사고

- 5.29. 사고 발생
- 6.28. 사건충격척도 전수 조사
- 8.6. 상담 실시
- 전 직원 대상 사건충격척도 실시
- 척도 실시 후 상담개입 늦어짐
- 사고 발생 후 회사 자체 대응 미흡과 낮은 개입으로 노동자의 불만이 높아 상담 시 어려움

인천00전자 화재사고

- 8.21. 사고발생 / 9.27. 개입
- 고용노동부 적극 연계하였으나 사업장의 비협조로 상담개입 늦어짐
- 상담장소 부적합, 상담시간 부족으로 밤 11시까지 상담지원

태안00 사고

- 12.11. 사고 발생 / 12.14. 개입
- 고용노동부 적극 연계로 빠른 개입
- 노조와의 충돌 조절 역할
- 충남, 서울,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와 지역사회 트라우마상담센터와 협업

제주000 사고

- 10.20. 사고 발생 / 10.25. 개입
- 빠른 개입
- 제주근로자건강센터의 지원요청
- 회사에 대한 분노가 높은 상태
- 회사의 적극적 지원
- 휴가 등 조치 이루어짐

태안화력 트라우마 상담 대응 경과

- 사업대상
 - 서부발전의 하청 사업장은 (주) O O 발전(4개팀), 재하청 O O 소속 노동자 (재해자 김용균님 소속은 1팀)
- 진행방법
 - 교육 및 사건충격척도 검사(18점 이상 고위험군으로 분류), 개인상담
 - 필요시 병원연계, 산재신청안내 및 도움, 소견서
 - 상담인력 : 국가트라우마센터, 근로자건강센터(대구, 대전, 서울, 서울서부, 충남), 두리공감
 - 상담원칙 : 전수 교육, 대면상담(고위험군, 추적관리시에는 전화상담), 상담장소 고려

인명경과

시 간	내 용	년 단	참여인원	비고
2018. 12. 14	○ 안정화 교육 설문 응답방법 설명, 설문 실시 및 수거	대구	7명 (성남대상 3명)	2팀
2018. 12. 17	○ 개별심리상담 실시	대구	2명	2팀 중 고위험군
2018. 12. 18	○ 안정화 교육 설문 응답방법 설명, 설문 실시 및 수거	대구	32명	1팀
2018. 12. 19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태안의료원	3명	
2018. 12. 19 ~ 20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국가안리위	44명	1팀, 새해맞이 참여4명, 장소 1명대상
2018. 12. 20	○ 개별심리상담 실시	충남	7명	신동기공, 원인상담
2018. 12. 24	○ 개별심리상담 실시	충남	1명	신동기공
2018. 12. 26	○ 개별심리상담 실시	서울, 충남, 대구	14명	
2018. 12. 26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5명	1차
2018. 12. 27	○ 개별심리상담 실시	서울강서	5명	원형 (서부발전)
2018. 12. 27	○ 개별심리상담 실시	충남, 대전, 대구	11명	
2018. 12. 27	○ 안정화 교육 설문 응답방법 설명, 설문 실시 및 수거	대구	29명 (성남대상 8명)	(25명 사전 총적어도급사)
2018. 12. 27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진행안함	1차
2018. 12. 28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1차
2019. 01. 03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9명	2차
2019. 01. 03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태안의료원	1명	
2019. 01. 04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5명	2차
2019. 01. 06	○ 개별심리상담 실시	대구, 충남	10명	(한국발전)
2019. 01. 08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대구	1명	
2019. 01. 10	○ 개별심리상담 실시	대구, 서울서부	9명	(한국발전 7명, 서부발전 2명)
2019. 01. 10	○ 안정화 교육 설문 응답방법 설명, 설문 실시 및 수거	대구	18명	(선위 정상)
2019. 01. 10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2명	3차
2019. 01. 11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4명	3차
2019. 01. 15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녹색병원	1명	
2019. 01. 16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태안의료원	1명	
2019. 01. 17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4명	4차
2019. 01. 18	○ 개별심리상담 실시	대구	4명	
2019. 01. 18	○ 개별심리상담 실시	두리공감	5명	4차
2019. 01. 25	○ 개별심리상담 실시	서울서부	2명	

사업결과

- 교육 - 트라우마 이후의 심리적 변화와 대처방안 - 서부발전의 하청 사업장 (주) O O 발전(4개팀), O O 소속 노동자 -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실시
- 사건충격척도 검사 -155명에 대하여 실시
- 개인 안정화상담 - 1차 - 5차에 걸쳐 상담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연계 - 4명
- 산재신청 - 1명
- 휴식과 업무량 조절을 위한 소견서 - 1명

사업평가 (긍정적인 측면)

삼성 크레인 사고와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센터의 시범
운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

	삼성중공업크레인사고	태안서부발전사고
계약형태	하청형태로 공사기간동안 일하고 공사 후 계약이 만료되는 형태	하청이지만 고정된 사업장에서 일함
비용	상담비용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실제 상담 진행에 어려움을 겪음	국가트라우마 센터, 두리공강,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협업으로 진행
상담시기	사고 1개월 후에 설문조사 시행하였으나 실제 상담은 5개월이 지나서야 상담	사고 4일 후 1차 교육 개입 (트라우마 상담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정부부처의 역할	트라우마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협조부족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권고
시민대책위의 역할	사고 모퉁에서 일하던 1,623명 중 923명이 퇴사하여 트라우마 관리에 어려움을 겪음	계조업으로 고정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작업 중지, 휴업 등에 역할을 하고 트라우마 상담일정 등 조율 가능
주요문제	생계, 고용의 문제가 크게 작용	불만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됨
산재신청상의 어려움	산재신청과정에서의 비용, 절차, 진단 등 트라우마와 관련한 산재신청 장벽이 작용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서 얻은 경험으로 산재신청 장벽이 낮아짐 (그러나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산재신청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산재 후 트라우마 산재보상에 대한 절차와 규정마련이 필요함)
사회적 지지	업종 특성상 회사자 많고, 직장이나 대책위 등의 사회적 지지가 어려운 구조임	일부 트라우마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었으나, 사측과 대책위의 지지가 힘이 되었음
기타	노동자들의 퇴사 등 지역에서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음 -> 타지역 노동자의 경우 타지역연계	국가트라우마 센터나 근로자건강센터가 원거리에 있어 트라우마 상담이 어려움 -> 지역 트라우마 상담센터(두리공강)의 역할이 중요

사업평가 - 제한점

-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의 경험부족 - 재해 사업장의 정보 파악 부족(원, 하청구조, 재해팀 등), 상담의 체계적인 계획 부족, 대형재해 개입경험부족 등등
- 산업재해 트라우마에 대한 경험 부족 - 사고직후의 개입, 후기 이후의 개입, 현장복귀 시점 등에 대한 경험이나 근거부족
- 트라우마 상담을 수행하는 전문인력과 시스템 부족
- 공동대책위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
-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소통과 연계가 필요
- 트라우마 상담에 대한 인식의 부족

산재트라우마의 특성

- 사고현장을 제거할 수 없음. 매일 출근 - 재노출, 재경험
- 책임주체가 분명 - 분노, 죄책감
- 개인별로 충격도, 대처방법, 회복기간 등의 차이 ->갈등
- 회사의 낙인, 드러내기를 기피
- 심리적 트라우마 간과
- 정상적인 직장생활 영위가 어려움 -> 경제난

산재트라우마의 고려점

- 사고현장이 철저히 조사되고 개선 -> 신뢰와 안심
- 개인 간 충격반응과 대처방식에 차이 -> 서로 지지
- 전노동자가 상담 -> 개별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게

전문가들의 고충

-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부족 - 사업주와 관리자의 인식부족
- 사업장 접근의 어려움 - 고용부, 공단의 태도에 좌우
-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 상담센터의 부족
- 트라우마 상담이나 직무스트레스 상담의 구조적 문제
 - 사측에 드러내고 싶지 않음과 사측의 연계없이 상담을 진행할 수 없는 딜레마
 - 사측의 의지가 없으면 직무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

고용부 산재트라우마 매뉴얼의 보완점

- 초*중기 심리적 위기 대응에 초점
 - > 재해발생 후 즉시, 혹은 7일 이내 대응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부족
- 3개월 이후 추적관리에 대해 다루지 못함
- 트라우마 교육의 상세한 내용과 안정화기법, 심층상담 기법 등 심리적인 부분이 부족
- 체계적인 개입에 대한 계획 부분이 보완


제언

- 산업재해에 의해 발생하는 트라우마는 근원적으로 산업재해이다. 심리상담 등의 치료적 과정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 등에 대하여 전향적 검토가 필요.
- PTSD의 산재요양 업무처리 지침을 개선하여 요양승인의 절차와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 트라우마 상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혹은 직업적 트라우마 센터의 협조에 의한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은 다른 부처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다.
- 정부는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다.
- 직업적 트라우마 센터는 전국에 1개소, 공단지금으로 운영되었고, 2019년에도 공단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 열심히 일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인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째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토 론 발 제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삼성중공업 크레인 재해 트라우마 관리 사례
-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 현 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거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는 인재”

(중앙일보) 입력 2017.06.15 13:09



지난달 7일 거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 모습. 송후근 기자

지난 5월 1일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는 작업자들이 장애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호소통에 혼선을 빚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장애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 수사결과 발표
6명 숨지고 25명 부상 관련해 25명 입건, 8명 구속영장 신청**

거제경찰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 모두 25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중 조선평장 A씨(61) 등 관리자 3명, 굴리앗 크레인 기사 B씨(53)와 타워크레인 기사 C씨(41), 굴리앗 크레인 신호수 D씨(47), 타워크레인 신호수 E씨(61) 등 현장 작업자 5명 등 8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크레인 전문기가 본 참사 원인 분석] 안전검사 폐지 및 전문신호수계도 도입 필요
17.05.02 17:04 박승민 기자 17.05.02 17:04 박승민 기자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1일 오후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발생한다. 박승민 기자

127주년 세계노동절 축제날에 거제조선소 해양플랜트 산업현장에서 집단 참사가 발생했다. 세계 경제 10위권이라고 자평하기가 부끄러운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5월 1일 오후 2시 50분경 800톤급 굴리앗 크레인인 인양능력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부딪치면서 60m 상부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지지 봉대(일명 링(jib))가 꺾이면서 하부에 있는 근로자 휴게실을 덮친 참사였다.

이날 참사로 무려 6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장상을 입었다. 지금까지 크레인 사고 중 가장 인명피해가 큰 사고로 기록됐다. 특히 이번 참사 희생자 대부분은 비정규직 하청근로자들이라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수주한 공사 납기일을 맞추는 구실로 공기 단축을 통한 이윤에 눈먼 대기업의 안전불감증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조선 산업이 더 어려워지면서 업체들이 “안전예산 공사비를 가장 먼저 줄이고 있다”는 현장 근로자들의 불평소이다.

크레인 사고 악몽 여전...관리 체계 마련 절실

입력 2017.07.11 (19:23) | 수정 2017.07.11 (19:51) | 320

표준 화질

고화질

키보드 컨트롤



매일노동뉴스

HOME > 사회·복지·교육 > 시민사회

삼성중 크레인사고 피해자 치료 못 받고 트라우마 시달려

근로복지공단 늦장대응에 고통 가중 ... 노동·시민·사회단체 12일 공단에 항의서한 제출

이르경 2018.01.12 08:00

지난해 5월1일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승인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근로복지공단의 늦장대응에 항의했다.

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건강대책위는 1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피해자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에게 적극적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할 근로복지공단과 감독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제2·3의 고통을 주는 가해자가 되고 있다"며 "산재요양의 신속한 처리와 2차 가해를 자행한 당사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항의서한을 공단에 제출한다.

트라우마로 인한 산재요양을 신청한 노동자는 7명이다. 5명은 공단 통영지사에, 1명은 울산지사, 1명은 대구지사에 각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재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에 1명, 11월에 3명, 12월에 3명이 신청했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이 지나서도 산재요양 신청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었다는 것이 대책위 설명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목격자 7명 '트라우마'로 인한 산재 인정됐다

입력 2018.04.27 18:39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부분이 작업장을 덮친 모습. 현장에 있던 근로자 4명(모자이크 처리)이 쓰러져 있다. 한국일보 독자 제공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명이 신청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끼리 서로 충돌해 근로자 휴게실을 덮치면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바 있다.

“조선소 물량팀장도 사용자 아닌 노동자” 재심서 산재 승인

등록 2018-10-25 13:56 수정 2018-10-25 22:07

작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때 부상당한 현장 물량팀장
고용부 산재 재심사위, 근로복지공단 가각한 업무상 재해 인정
“외관상 도급 사업주이지만 하청 업체의 지휘·감독 받은 노동자”



노동부가 작년 5월 1일 발생한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현장. 이 사고로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크게 다쳤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31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해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에서 팔다리를 다친 '물량팀장'이 1년6개월 간의 재심사 끝에 산업재해로 승인받았다.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청구조 최말단에 놓인 '형식적' 사용자도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삼성중공업 재해 트라우마 관리 진행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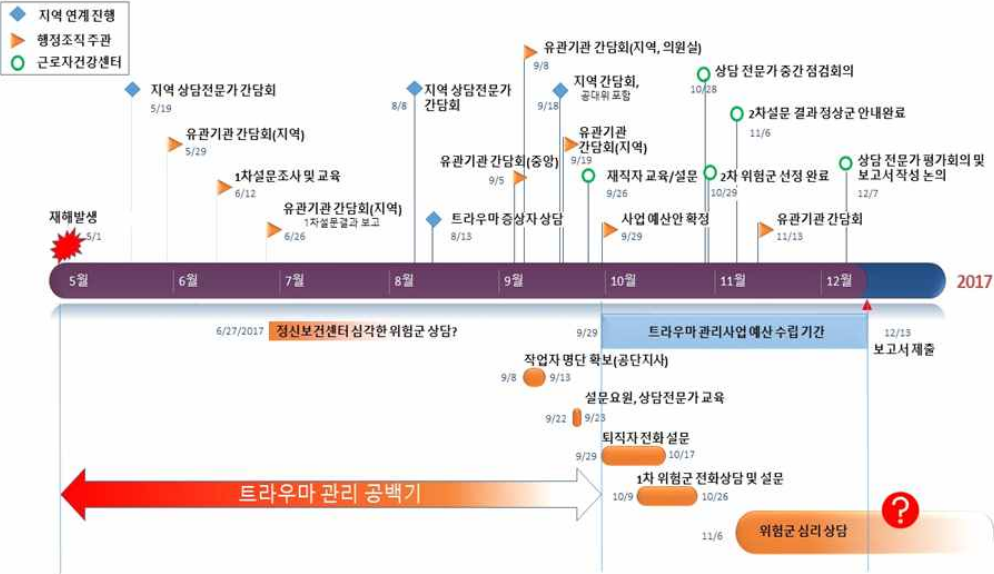
1차 설문 결과

	직영		협력		합계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정상	50	82.0	636	80.9	686	81.0
위험군 전체	11	18.0	150	19.1	161	19.0
경도-중등	8	13.1	102	13.0	110	13.0
심각	3	4.9	35	4.5	38	4.5
매우심각	0	0.0	13	1.7	13	1.5
전체	61	100.0	786	100.0	847	100.0

- 절단점은 24/25점 : full PTSD
- 정상 25 미만, 경도-중등 25-39, 심각 40-59, 매우심각 60 이상으로 평가

Ref) 한국판 사건충격적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은한정 외,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5;44(3):303-310
 Self-resilience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develop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n police officers, Lee et al.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16) 28:58

사업진행개요



사업결과

		빈도	열 N %
재직	설문시행	434	65.1%
	설문미시행	233	34.9%
	소계	667	100.0%
퇴직	설문시행	220	23.0%
	설문미시행	736	77.0%
	소계	956	100.0%
소계	설문시행	654	40.3%
	설문미시행	969	59.7%
	소계	1,623	100.0%
미확인	설문시행	193	100.0%
	설문미시행	0	.0%
	소계	193	100.0%

표 4. 기존 시행한 설문 응답자와 삼성중공업 제공 명단 비교

사업결과

	퇴사자		재직자			합계		
	인원	백분율	인원 협력	인원 원청	계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정상	240	74.8	243	73	316	90.3	556	82.9
위험군	81	25.2	32	2	34	9.7	115	17.1
경도-중등	38	11.8	26	2	26	7.4	64	9.5
심각	29	9.0	5	0	5	1.4	34	5.1
매우심각	14	4.4	3	0	3	0.9	17	2.5
전체	321	100.0	275	75	350	100.0	671	100.0

표 6. 2차설문 결과 위험군 분포

	직영		협력		합계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정상	50	82.0	636	80.9	686	81.0
위험군 전체	11	18.0	150	19.1	161	19.0
경도-중등	8	13.1	102	13.0	110	13.0
심각	3	4.9	35	4.5	38	4.5
매우심각	0	0.0	13	1.7	13	1.5
전체	61	100.0	786	100.0	847	100.0

표 7. 2017년 6월 12일 설문결과 위험군 분포

사업결과

1) 1차 설문 위험군에 대한 전화 상담

1차 설문 결과 위험군에 대한 상담은 4명의 상담전문가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며, 6월 12일 설문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된 161명 중에서 상담전문가와의 전화상담은 78명(48.4%)이 이루어졌다.

2) 2차 설문 위험군에 대한 상담

2차 설문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된 115명 중 54명(47%)에 대하여 상담전문가와 9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전화상담이 61건(67.8%), 대면상담이 29건(32.2%)로 전화상담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삼성중공업에서 협조하기로 한 상담공간 마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면상담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면이 있으며 또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대상자들의 사정 또한 대면상담의 비중이 감소하게 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상담별 회기는 1회기가 39명(72.2%)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최장 7회기까지 상담이 이루어졌다.

사업결과

회기수	건수	인원(%)	상담방법	건수	비율(%)
1	39	39(72.2)	전화	61	67.8
2	16	8(14.8)	대면	29	32.2
3	9	3(5.6)	합계	90	100
5	5	1(1.9)			
7	21	3(5.6)			
합계	90	54(100)			

표 9. 위험군 대상 상담 현황 요약

국적	문항1	문항2
	5/1일 크레인 전복사고 이후 심리 검사에 응한적 있었는데 한국어로 된 검사지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5/1 크레인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몸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지
1 미얀마	이해할 수 없었음	현재는 이상 없음
2 미얀마	도움받아서 조금 이해했음	어떤 질문인지 이해하고 싶다. 다음에는 번역본을 제공해 주세요.
3 우즈베키스탄	이해했음	이상 없음.
4 우즈베키스탄	연락이 안 됨	
5 우즈베키스탄	연락이 안 됨	
6 우즈베키스탄	이해 못했음	이상 없음
7 우즈베키스탄	연락이 안 됨	
8 우즈베키스탄	연락이 안 됨	
9 우즈베키스탄	연락이 안 됨	
10 우즈베키스탄	연락이 안 됨	
11 중국	이해할 수 있었음	이상 없음
12 중국	이해할 수 있었음	이상 없음
13 중국	이해할 수 있었음	이상 없음
14 중국	이해할 수 있었음	이상 없음
15 중국	이해할 수 있었음	이상 없음
16 중국	이해할 수 있었음	이상 없음
17 중국	이해할 수 있었음	이상 없음
18 중국	이해할 수 있었음	이상 없음

표 11. 이주노동자 PTST 관련 증상 유무 확인 결과

심리 상담에 대한 질적 분석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한 주요 심리적 증상과 반응

1) PTSD의 전형적 증상

- 재경험, 침습 증상(intrusive thoughts)

오늘 너무 힘들었다. 5시에 일이 끝났는데 어제 잠을 못자고... 잠드는게 무섭다. 정신과에 가고 있고 자다가 안 좋은 꿈을 꾸다가 중간에 깨고... 팔다리가 끊어져나가는 악몽을 꾸다. 정신과 약을 먹는데도 잠이 안온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의외로 잠을 좀 잘 수 있었다. (21세 남성직)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가 못 피하고 사고를 당했다. 와이어가 끊어질 때 몸이 잘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미안했다. 몸이 안 좋아서 몸살 약만 지어먹었고 귀도 이상해서 이비인후과에 갔다. 숙소에 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 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55세 여성)

집에 있으면 전정이 내려앉는 것 같다. 못먹고 토하고. 두통도 심했다. 텔레비전에서 크레인이 나오자 발작을 했다. 너무 가슴이 아팠다. (55세 여성)

강심장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는데 사고 이후에는 피를 볼 수 없다. 큰소리가 나면 자주 놀래고 예민해지고 며칠전 어머님혈관에 주사를 찌다가 피가 터진 적이 있는데 그 피를 보고 흥분해서 간호사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소란을 부렸다. 피를 보게 되니 자기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된 거처럼 흥분해서 껴하게 화를 내었다. (56세 여성)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한 주요 심리적 증상과 반응

- 회피(avoidance)

당시 p모듈에서 일했고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내게도 항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후로 타워크레인 쪽은 못 지나간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쪽도 지나가지 못한다. (59세 남성)

크레인쪽으로 못간다. 심장이 뛰다. 피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 나도 모르게 예민해져서 싸우기도 하고 성질 내는것 같기도 하고...담배 한 대 피고 내려오고 1-2분만 빨리 갔다면 나도 어찌되었을지 모른다...다른 사람들은 TV 뉴스도 보기어렵다고 하더라. 나는 우울하기는 해도 TV 볼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미상 남성)

크레인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멀리에서 크레인이 보여도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질 거 같다는 공포를 느낀다. 불안감으로 인해 크레인을 보면 돌아가거나 밀폐된 공간을 찾아서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현재 조선포 일은 못하고 있으며 크레인이 없는 일용직 일을 골라서 하고 있다.(35세 남성)

현재 일용직으로 생활 중인데 크레인 있는 곳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크레인 없는 작은 곳만 일을 하러 다니다 보니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사람이 죽고 몸이 잘린 것을 목격했다 보니 크레인만 보면 무섭다. 크레인을 보면 피해서 다니고 크레인은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나 일을 할 수 없음에 불편함도 너무 크다. (34세 남성)

조선포 밖에서 전기 쪽 일할 때 높은 곳에 안전장치 부족해도 균형감 믿고 가서 42m 높이 올라가셔도 시원하다는 느낌으로 일했던 적도 있는데, 이번 일 목격하고 나서 즉장 위에 있을 자신이 없어졌다. (31세 남성)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한 주요 심리적 증상과 반응

- 인지 및 감정의 부정적인 변화 (negative alterations in cognitions and mood)

조선에서 일한지 많지도 되지 않았는데 주변에 보니까 팀을 꾸려서 일을 하면 당시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 그래서 이모들을 구슬려서 팀을 꾸렸고 한달은 많은 돈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 사고가 났고 나 때문에 그분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 같아서 미안하고 괴롭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럴 때 너무 괴로웠다.(21세 남성)

과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고 사고 생각도 난다. 계속 불안한 상태다. 불안하고 조조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한 번씩 숨쉬기가 가쁠 때가 있다. (그럴 때 드는 느낌은?) 이리다가 숨이 막혀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으로 더 힘들어 진다. (57세 남성)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대구이고 아기가 어려서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 것이지만 일거리가 생기면 다시 거제로 갈 것이다. 매일 매일이 우울하고 즐겁지가 않다. 왜 이리가 생각해보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곳으로 일 하러가는 부담이 있는 것 같다. 꼭 같은 곳이 아니어도 이런 사고는 내가 일하는 곳 전반에 나타날 수 있고 일하는 사람은 꼼꼼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전보다 더 기운이 없고 늘 불안하고 짜증을 내게 된다. 거제로 다시 돌아가면 상담을 꼭 받고 싶다. (35세 남성)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가 못 피하고 사고를 당했다. 와이어가 끊어질 때 몸이 잘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미안했다. 몸이 안 좋아서 몸살 약간 지어먹었고 귀도 이상해서 이비인후과에 갔다. 속소에 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 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는 사람이 내가 있는 곳에 와보고는 놀랐다고 한다. 평소에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집이 너무나 어질러져있으니까... 위육이 없었고 만사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다. (55세 여성)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한 주요 심리적 증상과 반응

- 각성과 반응(arousal and reactivity)

그 후 일상에서 분노조절이 안 되서 우리 집 어린 아기를 때려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생겼고 회사 내 안전요원과 다투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였음. 안 피던 담배를 한 갑 반정도 피고 있다. 그 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미상 남성)

사고 이후 정각이 예민해 져서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화가 난다. 아이들이 놀다가 큰소리를 내면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고 이후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아이들이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종종 한다고 함. 아이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라도 아이들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으로 괴롭고 상담을 받아야 하는건 아닌지 고민을 했다. (37세 남성)

하지만 지금도 만사가 귀찮다. 동료와 가족들에게 화를 자주 내니까 아내가 “늙어갈수록 성격이 이상해진다 고...” “푸념을 한다. 좋게 말해도 될 것도 언성이 높아진다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럴까...하는 생각도 들고... 마음을 비워보자고 노력도 하지만 급한 성격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것 같다. (59세 남성)

너무 공포스러워요. 처음 임원할 때만 해도 나올 거라고, 이거만 넘어서면 될 거라고 몸에 대한 공포심은 그전엔 없었던거거든요. 근데 이 몸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밤 먹다가도 울어요.(울먹거림) 너무너무 화가 나요. 분노예요. 혼자 있을 때 막 소리 질러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나요.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렇게 헤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TV내용도 뭐고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39세 여성)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한 주요 심리적 증상과 반응

2) 행정기관, 사업주 등에 대한 불만과 불신

3개월 휴직을 했다.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다. 퇴사를 하고나니 회사에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삼성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다. 너무 원망스러웠고 목소리 들어보아야 화만 날 것 같아서. (57세 남성)

결국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전화도 너무 늦게 받았다. 지난번에 상담을 연결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은 이후 기다렸는데 결국 지금까지 도움을 받지 못했다. 아무도 못 믿겠고 화가 난다. 도움을 줄 게 아니면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24세 남성)

회사는 퇴사한 상태고 사고 당시 처음에는 힘들고 심각했다. 그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두 세 차례 이직했다. 휴업급여를 십 만원을 받았다. 회사의 사정으로 일할 수 없었는데 보상이 너무 적어 생활을 할 수 없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생계와 직결되는 수당을 꼭 해결해 달라. 이 말은 꼭 전달해 달라. 사람을 너무 소모품처럼 쓴다. (49세 남성)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한 주요 심리적 증상과 반응

사고가 나면 빨리 개입하고 빨리 종결해 달라. 잊고 지나가야 할 일인데 지속적으로 회상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 회사도 문제다. 무재해 운동에서 재해가 생기면 숨겨야 살아남는다. 안그러면 패널티를 주는 구조다. 이런게 있을수 있는가? 그렇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밥먹고 살아야 하니까. (49세 남성)

식당도 수가 적고 식사 시간도 짧아서 식사 줄였다가 밥 먹고 나면 제대로 소화시킬 시간도 없고 기본적인 것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으며 화장실을 몇 백명이 사용해야 하다 보니 화장실 한번 갈려고 해도 줄을 길게 서야하는 구조인데 도움 주는 거 없이 연락 하는 것이 싫다. 워낙 위험한 곳이라 사람 죽는 건 여러 번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눈하나 깜짝 안하게 된다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연락해서 사람 힘들게 안했으면 좋겠다.(항의하고 끊임). (35세 남성)

사고직후 상담을 받아 보겠냐는 전화를 받았을 때 상담을 받고 싶다고 답했으며 이후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노동부를 방문했을 때 노동부에 주재하는 상담사와 한시간 20분 정도 상담을 진행했으나 상담사가 듣기만 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어 상담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졌다.함. (37세 남성)

PTSD 증상을 지속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들

1) 경제적 위기와 고용 문제, 그에 따른 불안

벌어둔 돈은 다돼가고... 알바하다가 일이 없어서 쉬고 있다. 다음 주에 조선소에 일이 있다고 해서 나가기로 했다. 지금보다 돈은 훨씬 적지만 놓고 있을 수만도 없고 지난번 하던 일보다 쉽다고 들었다. 아직 군대도 안 갔다왔고 여기 오기 전에 계획이 있었는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다...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카드값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카드 회사마다 조금씩 달랐다.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일은 하고 있지만 당장 돈이 없어서 나누어서 내겠다고 했다. 나한테는 큰돈이지만 돈 액수가 그리 큰 것도 아닌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깐 궁지에 몰리는 것 같다.” (21세 남성)

회사가 11월 30일 전면 폐업될 예정이다. 원청의 핑포라 생각한다. 이번 재해 때 인사사고가 있었고 인사사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원청의 크레인 조작 상 문제라는 말이 있는데도 폐업 당하는 것은 하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면증이 지속되는 것 같다. (49세 남성)

PTSD 증상을 지속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들

잠을 자지 못하다가 새벽 3시에 자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고 이 상태로는 일할 곳을 찾을 길도 막막하게 느껴진다. 아내의 퇴직도 가까워오고 있는데 몸이 이러니 일을 시작할 수도 없고 압박감이 크다. (59세 남성)

현재 조선소 일은 할 수가 없다. 15년간 조선소에서 일을 해왔는데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답답하나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실업수당, 휴업수당, 보상금 그 어떠한 것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도 불편한 상황이다. 현재 일용직으로 생활 중인데 크레인 있는 곳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크레인 없는 작은 곳만 일을 하러 다니다 보니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34세 남성)

다만 사고가 일어난 후 몇 달 동안 본인의 의지로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상처 받은 것보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이 먹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가 걸린 일이라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속상하다. 강제 집행으로 일하지 못한 부분은 해결해 주지 않고 모른 척 하는 부분이 괴심하다. (49세 남성)

PTSD 증상을 지속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들

2) 사회적 지지의 결여

이런 지원이 왜 이제야 되는 것이냐 그동안 혼자서 해결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었다. (57세 남성)

병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나는 힘들고 불안하다. 이런 지원이 왜 이제야 되는 것이냐 그동안 혼자서 해결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었다. (57세 남성)

재해 후 안내에 따라 보건소에 2회 방문하였으나 회사에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조퇴나 결근으로 처리되었음. 보건소는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았다. 사고 났을 때 심리치료를 받을 의향이 없다는 유사내용에 강제로 싸인을 했기 때문에 병원비를 청구할수도 없다.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할수 없었는데 일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았고 한 달 월급을 22만원 받았다. 앞진데 뭉친격으로 원청에서는 최근에 임금단가를 낮추겠다고 강제로 서약을 받아가기도 했다. (남성)

상담을 받고 싶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라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병원비도 다 내가 부담해야하고 이렇게 억울할 데가 없다. 이번 상담도 나는 통영인데 거제로 오라고 하니 화가 좀 난다. 결국 피해임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다. 나도 상담 받고 싶어서 여러 기관 알아봤다 그런데 6시 이전에 오라고 하더라 공휴일도 안 되고 나처럼 일부터 먼저해야하는 상황에서는 마음 편히 상담 받을 곳이 없었다. 나는 일을 구해야하고 일이 있으면 무조건해야한다. 그래서 일을 안하는 날 받고 싶다. 병원가서 치료도 받고 싶다. (41세 남성)

당사자들의 요구와 제안

- PTSD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었던 노동자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는 동료들에 대한 관심을 요구
- 재해 발생 이후에 조기에 개입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도의 구축과 이러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체계에 대한 요구도
- 금번 사업에 대하여서는 상담공간을 회사와 관련이 없는 안정적인 곳으로 정해줄 것에 대한 요구
- 휴업과 관련한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
- 재해 발생과 대처에 있어서 원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
-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좀 더 근원적인 해결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당사자들의 요구와 제안

-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되기까지도. (35세 남성)
- 힘들었다. 처음에는 울기도 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울기도 했다. (그때는 어떻게?) 남편이 많이 도와줬다. 자다가 깨서 울고 있으면 다독여주고...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되었다. (병원에 가볼 생각은?) 나 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 했다. 재해 이후에 대기하던 중에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였다. 그들이 제일 심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도와 줘야 한다. 다들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힘들니까 다 그만두는 것 같았다. (46세 여성)
- 사고가 나면 빨리 개입하고 빨리 종결해 달라. 잊고 지나가야 할 일인데 지속적으로 회상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 회사도 문제다. 무재해 운동에서 재해가 생기면 숨겨야 살아남는다. 안그러면 패널티를 주는 구조다. 이런게 있을수 있는가? 그렇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밥먹고 살아야 하니깐. (49세 남성)
- 현재는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일이 있고 바쁘게 사니까 또 살아가지는 것 같다. 그러나 당시 근로자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므로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서비스를 연결해 달라.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지 힘없는 노동자가 감당할 것이 너무 많은 현실이므로 사회가 분노감정에 더 깊게 빠지기 전에 도와 달라. (42세 남성)
- 나도 그 이후에 휴직하라고 권유를 받았지만 일하는 장소만 바꾸고 계속 일을 해왔다. 협력사에서 일어난 사고는 산재 처리를 못하게 한다. 점수를 못 받으면 퇴출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회사에서 산재를 하라고 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사고가 워낙 컸고 외부에서 다 알아버렸으니 회사에서도 저렇게 나오는 것 같다. (59세 남성)

당사자들의 요구와 제안

- 먹고 살아야 하다 보니 지난번 사고 났던 모들로 일을 하러 갔는데 두 달 일을 하고도 업체가 폐업하는 바람에 급여를 못 받아서 노동부에 제소한 상태이다. 본인 외에도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많다. 사고 난 이후 걸으려는 달라졌는지 몰라도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이다보니 급여도 못 받는 상태가 생기는 것이다.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이고 관리부실도 여전히인데 책임자는 그에 대해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고 피해자인 노동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기대되는 바가 이제는 없다. 얼마가 되었든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피해보상 해야 하며 이 사고를 인정하는 모습의 원정의 모습을 원한다. (44세 남성)
- 현장에 가면 안전데 소용없다. 보호 장구가 필요 없는 곳이다. 임으면 뭐하나 고리를 걸 수 있는 데가 없는 곳에서 일하는데. 걸 데도 없게 해놓고 안 걸고 있으면 패널티를 준다. 그 조직이 그런데다. 작업환경이 아주라장이다. (55세 여성)
-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한 것은 원정의 풀 때문이었고 무책임한 원정의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안전에 대해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것이니 그 무책임함에 대해 원정이 책임을 져주길 원한다. 휴게시설은 크레인 아래 두면 안 되는데 원정은 이를 어기고 그 아래 휴게시설을 두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진 것임에도 그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고 여태 급여조차 주지 않는다. 사고 당시 작업자는 300명이나 목격자가 600-700명인 이유가 휴게시설이 적다 보니 생긴 일로 원정이 규정을 어기고 운영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보상을 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49세 남성)
- 나도 당연히 상담 받고 싶다. 나는 직접피해자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괜찮다고 생각해왔는데 갈수록 힘들다. 그런데 스스로도 그렇고 타인들도 그렇고 직접 당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힘들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이 곳에서 계속 일자리를 얻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억울하다.
- 상담 장소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 회사와 관련된 공간에서 한다면 어디든 싫다. 그런데 오늘 통화하면서 실컷 말을 하는 거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니 통영에 상담 장소가 준비되면 알력 달라. (41세 남성)
- 상담 장소가 회사 안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들리는데 그 안에서 상담을 받고 싶지는 않다. 상담 장소만 안전하다면 당장 내일이라고 받고 싶다. (44세 남성)



평가와 제언



당시 사업 수행의 의의

- 중대 산업 재해 이후의 다수의 직간접 경험 노동자들에 대한 관한 공공 자원 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거의 최초의 관리 사례로 이전의 가습기 살균제, 세월 호 등의 사례들에 공공과 민간 자원의 연계가 있었으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서는 최초의 사례로 의미
- 이전의 재난사고의 경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신체적 손상을 당한 재해 당사 자만이 아니라 2차 피해자들을 포함한 관리를 시도하였음
- 산업재해는 연간 9만여건 발생하여, 사망자 1,700여명이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
- 직업성 트라우마의 관리에는 당연하게도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보건소, 근로자건강센터, 지역민간자원 등의 유기적 협업의 필요함을 확인
- 향후를 대비하여 직업성 트라우마의 공적인 관리 체계를 실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시행착오의 경험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 수 있을 것

사업 수행과정의 제한점 검토 및 평가

- 사업 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라는 위험요인에 주목
-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를 모두 포함하여, 자신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에서 느끼는 유대감, 신뢰감, 자존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의미
- 삼성중공업 중대재해 관련 트라우마 관리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경험과 시행착오를 이번 재해를 포함하여 생산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신적 외상(이하 직업성 트라우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지체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제언하고자
- 지지체계에 대한 논의는 산업재해 예방행정조직, 공공 의료기관, 산업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한 산재보상 조직, 심리지원 및 의학적 지원과 관련한 민간 조직, 트라우마 관리 전문가, 고용유지와 생계유지와 관련한 사회적 지원 등을 모두 포함

1) 기술적 측면

① 시기성

사회적 여론에 밀려서 사고 발생이후 5개월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진행된 것 자체가 관리사업의 효과성을 반감시키고, 때로는 사고당시의 상황을 재경험하게 만들기도 하는 문제

② 접근방법

-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트라우마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당시 재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은 아닌가
- 당시 트라우마에 대한 고통스러운 재경험을 일으켜서 오히려 당사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평가 요구
- 재해와 직접 관련된 트라우마 이외에 관련 요인들에 대한 고려의 부족
작업중지, 휴업(건강상 혹은 기타 이유)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의 문제 및 낙인찍기, 이후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한 고려의 부족

1) 기술적 측면

③ 연계 체계의 문제

- 타지역 근로자건강센터로 연계의 어려움. 지역적인 거리로 인하여 대면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연계 필요성이 높았으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단계까지 상담심리사가 많은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며 타 지역으로 연계 시 상담의 일관성이나 신뢰관계를 재형성하는 것이 어려움. 다른 상담사들에게 이야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재해 노동자는 다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
- 정신건강의학과 연계의 어려움. 전문의들 직업성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폭넓지 못한 상황,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한 절차 자체에 대한 이해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빚어지는 노동자들의 심리적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상후스 트레스장애라는 상병에 대해서만 접근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1) 기술적 측면

④ 트라우마 관리를 수행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의 부족

- 공공 자원 : 지역 정신보건센터, 근로자건강센터가 존재하나 전문성이나 인력자체의 부족
- 민간 자원 : EAP, 지역 심리상담 전문가 등이 존재하나 일상적 연계통로가 부족하며, 비용지불 재원이 부재
- 삼성중공업 재해와 같이 다수의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된 경우 특히 문제가 됨
-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훈련된 인력과 제도의 부재
- 전국 각지로 흩어진 노동자들을 연계할 체계나 시스템 부재

2) 공공행정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의 문제

① 산재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에 대한 안전보건 행정 기관의 인식과 경험 부족

- 고용노동부 본부/지청, 안전보건공단 본부/지사, 보건소, 근로자건강센터 간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
- 기존의 범제도나 지침은 미비하나 존재하지만 실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관리 기제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경직성을 확인

② 각각의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야 할 부분들을 근로자건강센터가 사업을 주관한다는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함

- 다수의 PTSD 위험군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사업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함
-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례에 대한 대책 수립 요망
-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른 관리가 실제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지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2) 공공행정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의 문제

③ 행정적인 절차와 자원 등의 문제로 조기개입 실패

- 기존의 연계관계가 있던 지역 상담심리자원을 활용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자원 마련이 안되어 조기 개입하지 못함
- 조기 개입의 부재로 인해서 이후 관리 사업에 부가적인 시간과 인력 비용이 소모됨
- 작업중지 기간에 위기관리, 교육, 증상설문,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한 안내, 향후 문제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등에 대한 기회를 놓침으로 개입의 효과가 반감
- 뒤늦은 접촉으로 인하여 실제 문제가 있는 노동자들이 주적관리탈락 하여 향후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짐
- 조기 개입에 실패하고 뒤늦게 시행된 설문조사나 관리 사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감이 설문요원이나 상담요원에게 표출

2) 공공행정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의 문제

④ 근로자건강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진행에 따른 문제 지점

- 재해이후 트라우마 관리에 필요했던 전반적인 문제(휴업과 고용, 임금문제등 경제적인 문제, 공공 지원 연계 시스템의 부재 등)를 포괄하지 못하고 경남근로자건강센터의 심리상담 사업 위탁으로 대처해버리는 문제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사업 위탁수임 기관으로서 행정상 발견되는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기가 어려운 구조
- 안정적인 상담 공간 확보, 향후 진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행정적 권한이나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의 한계

3) 산재보상제도의 느슨한 보상구조

-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산재 신청 프로세스 자체의 미비로 실질적 도움이 안됨
- PTSD 산재 신청 과정에서 높은 비용이 드는 종합심리검사 등이 요구되어 노동자들의 부담이 가중
- 휴업급여 관련 평균임금의 산정 시기의 문제로 산재가 인정되어도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됨. 진단시기 기준이 아닌 사고발생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고려
- 정신과 진료비 등 요양급여는 실제로는 크지 않음. 병의원이 아닌 기관에서의 상담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에 대한 방안을 고려해야 함.

4) 기타

- ①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대책 부재
- ② 지역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와의 소통의 부재
- ③ 사회적 관심의 부족
 -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적인 요구를 통해서 트라우마 관리 사업에 힘이 실릴 수 있어야 하나 전체적으로 경남근로자건강센터의 상담사업 진행으로 문제를 대처해버린 듯한 진행 과정
- ④ 상담심리사의 소진
 - 사업에 참여한 상담심리사들은 공식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자원이 참여, 여러가지 한계가 있음을 알고도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
 - 뒤늦은 개입에 대한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폭언 등)을 책임 당사자 대신 상담심리사들이 직접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정서적 소진

4) 기타

-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필수적인 대면 상담 공간의 미비, 증상 호소자들의 실제적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계획의 미비, 증상을 악화하는 사회경제적인 제반 여건 개선 가능성의 부재 등으로 상담자 스스로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내담자와 신뢰형성을 하고 상담을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괴감 등을 호소
- 트라우마 관리 사업에 대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상담공간 확보, 지역적인 연계 방안, 전문 진료 연계, 산재상담 연계,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 후속사업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해서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심리사 개인의 상담역량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
- 트라우마의 3차 피해자가 될 수 있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의 경험이 그대로 묻혀버리지 않도록 사회적 방안을 같이 찾아가도록 해야 함



제언

- 트라우마 관리의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교육하고 양성하고, 트라우마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타의 트라우마 센터 및 전문 진료와 연계할 수 있는 직업성 트라우마 센터가 필요하다.
- 전국의 근로자건강센터의 상담전문가의 인력을 충원하고 트라우마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민간의 전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중대재해 발생 시 트라우마 관리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개입,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상의 규정이 필요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질병 목록에 있는 PTSD에 대한 산재요양 업무처리 지침을 개선하여 요양승인 절차의 장벽을 낮추고, 재해자에게 실제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점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심리상담 등의 치료적 과정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에 대하여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성 트라우마 관리에 있어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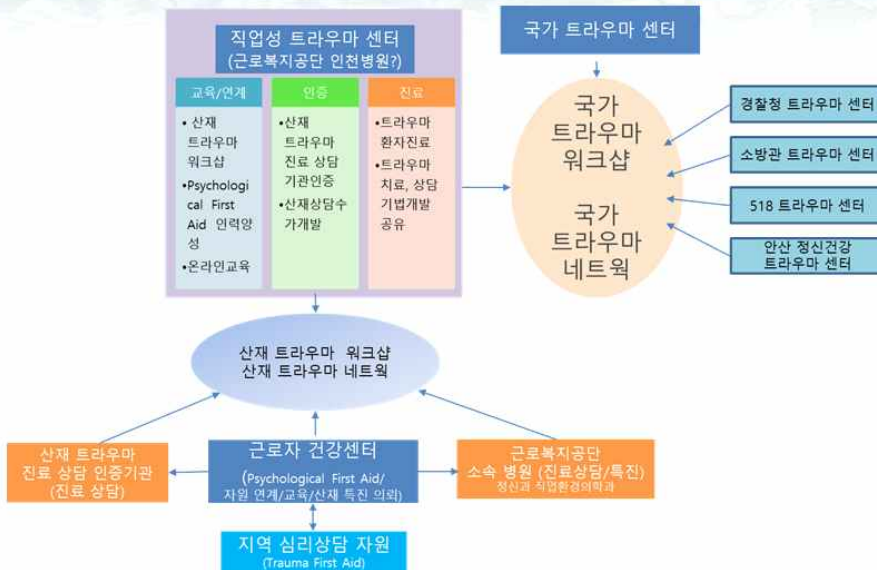
- 상담심리 전문가 및 현장관리자 등 다양한 2-3차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돌아갈 일터가 안전하고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손상시키질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함
 - 원직장 원직 복귀가 아니더라도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노동자들의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을 지켜주도록 해야 하며 이는 사회전체의 노동안전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최종적인 해결책
 - 만일,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제대로 지지받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믿음이 필요
 - 일상적 사전,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해서 재해자 당사자, 위험군, 사업주, 행정기관 등에서 모두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추가 제언

- 최근 직업성 트라우마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비교적 활성화 되었음
-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라는 위험요인에 주목,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를 모두 포함하여, 자신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에서 느끼는 유대감, 신뢰감, 자존감에 대해 어떻게 자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의미
 - 이때 재해 현장의 노동자들이 수동적 관리의 대상으로만 파악해서 현장으로부터 일방적인 격리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사회적 지지 체계의 일원으로서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자신의 동료 노동자들과 일터의 안전을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참여의 기회에서 일방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일터의 안전확보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을 통해서 이후에 지속되는 직책감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일터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통해서 사회적 위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상담심리 전문가 역할이 중요하지만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주체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함.

직업성 트라우마 센터 운영 체계 제안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운영 모델 연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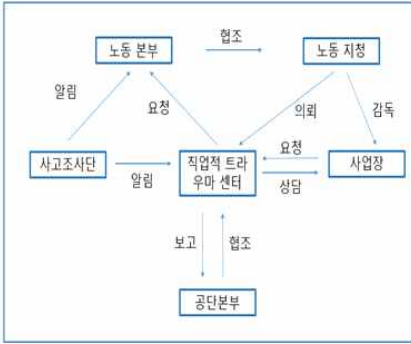
01 직업성 트라우마 센터



- 센터의 위치
 - 트라우마 관리와 진료 체계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구성되어 있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내에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인천병원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운영재원과 인력
 - 산재예방기금을 활용(?) - 별도 예산 사업
 - 정신과 전문의 2-3인, 상담전문가 5-6인, 기타 행정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운영재원과 세부 인력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01 직업성 트라우마 센터

- 기능과 역할
 - 진료 : 트라우마 환자를 직접 진료하며, 트라우마 치료 및 상담기법을 개발하고 공유한다.
 - 인증 : 산재 트라우마 진료 상담기관을 인증한다.
 - 교육 및 연계 : 산재 트라우마 워크샵과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산재 트라우마 관리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경찰청 트라우마 센터, 518 트라우마 센터,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관리 기관들과 협업한다.
 - Psychological first aid 요원에 대한 교육자료 및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하도록 한다.
 - 수가 개발 : 현재 정신건강수가체계 내에서는 트라우마 상담과 심리상담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산재보험에서 상담 수가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기능과 역할

1. Psychological First Aid

관할 지역 내에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로부터 직접 통보 받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과 근로감독관의 사고원인 조사 시에 동행하여 외상에 대한 응급 지원

2. 추적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대상자들과 사업장에 대한 추적관리를 시행, PTSD의 진단기준이 되는 1-3개월까지는 대상자들과 사업장에 대한 1차적 관리를 담당함.



3. 위험군에 대한 의뢰

심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거나 PTSD 위험이 높은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함

4. 산재 특진 신청

트라우마 환자들의 경우에는 산재 신청과정 자체가 중상의 경과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사례를 관리해 온 근로자건강센터의 전문의의 소견을 통해서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5. 지역 자원의 관리

Psychological Trauma First Aid가 가능한 민간 상담인력을 교육하고 지속적인 연계 체계를 유지하여,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감당하기 대량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02 근로자 건강센터



- 인력
 - 현행 상담전문가 1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1인 이상의 상담전문가의 증원이 필요함
- 자원
 - 상담전문가의 총원 민간 상담인력을 교육하고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트라우마 관리에 대한 사업비의 책정이 필요함. 산재예방기금 활용 가능성 검토
- 기타
 - 실적과 관련하여 트라우마 관리에 대한 기관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가산하는 방안이 필요.

03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 기능과 역할
 - PTSD 산재 특진 : 근로자 건강센터로부터 의뢰된 트라우마 환자들에 대한 산재 신청을 위한 특진을 시행하도록 한다.
 - 트라우마 환자 진료 : 병원 정신과에서 트라우마 관련된 치료 기법이나 자원을 '직업성 트라우마 센터'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상담치료 등을 포함한 질 높은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인력
 - 정신과 전문의, 상담심리 전문가, 행정인력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것임.
 - 2,3차 패널토론회 이후에 추가적으로 구체 사항을 보완예정

04 산재 트라우마 진료/상담기관 인증

-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소속 정신과 진료를 활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접근성의 제약을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함.
- 산재 트라우마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적정 수준의 진료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지역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에 대하여 인증 제도를 두고,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수가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
- 인증 주체
 -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산하의 직업성 트라우마 센터 내에 인증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증 요건
 - 세부적인 요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
- 기타 필요한 사항

05 산재 특진제도의 활용

- 현재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산재 특진 제도를 직업성 트라우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 산재보험법령(산재보험법 제119조 및 시행령 제117조)에 의하면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특진 기간에는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의 상담프로그램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직업성 트라우마 센터의 설립에 대한 자원과 자원 확보 가능성 검토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산재 특진 제도 및 진료지원에 대한 가능성 검토
- 정신과 진료 외에 상담을 통한 치료 기법도 산재보험 수가로 책정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 산재 트라우마 진료 및 상담 기관 인증에 관련한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한 제도 수립이 가능한지 검토

- 근로자건강센터의 트라우마 관리 및 상담 능력 강화를 위한 자원 및 자원 확보 가능성 검토

-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된 사안에 대한 근로자건강센터와 공유하는 체계를 확보
-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반드시 근로자건강센터 혹은 Psychological First Aid가 가능한 인원을 동반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

감사합니다
cactus626@gmail.com

노동현장 심리적 위기상황 유형과 현행 법제도 한계 - 사망사고 등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 장경희

1. 노동현장 심리적 위기상황의 유형

<표 1>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위기 상황

구 분	내 용
사고 및 재해 경험과 목격	자살, 산재, 사고 등의 직·간접적 경험
폭력	조직에 의한 구조적 폭력 : 노조탄압, 구조조정, 부당징계·해고, 가학적 노무관리 등
※언어적·심리적·물리적 폭력을 모두 포함	대항권이 상실되거나 위축된 상태에서의 대인간 폭력 : 권력 및 서열에 의한 폭력, 고객·상사·고참·집단의 개인에 대한 폭력·괴롭힘, 성 관련 폭력
※실제 행위와 의도(의사)를 포함	외력에 의한 폭력 : 침입 등을 통한 강도·협박·상해 등
	인격권의 침해 : 나이·장애·성·언어·정치성향·신념 등 개인 존엄의 침해
직장상실	고의성은 없지만 개인 삶의 큰 변화를 야기하는 파산·부도·폐업·이전 등

사고 및 재해의 경험과 목격

노동현장에서는 다양한 사고와 재해들이 발생한다. 추락, 끼임, 절단, 붕괴, 폭발, 협착, 가스 유출 등의 중대재해로 심각한 신체적 손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그 외에도 지게차에 치이거나 적재된 제품이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도 발생한다. 나아가 노동현장 혹은 사업장 내부에서의 자살사건, 돌연사와 같은 중대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서 생존자들의 일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사고 당시의 장면이 불현듯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하고 반복되는 꿈을 꾸기도 한다. 사고 발생 현장을 다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사고나 재해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목격하거나 사고자 또는 재해자의 구조를 위해 응급처치를 했던 사람들 역시 동일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다.

폭력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양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그 첫 번째가 조직에 의한 구조적 폭력이다. 구조적 폭력의 특징은 폭력의 가해자가 특정 개인차원을 넘어선 집합차원(조직 그 자체)이며, 가시적이지 않고 비가시적이면서도 강한 강제력을 띄고, 종종 정당한 규범성을 갖는다는데 있다. 더불어 때로는 매우 가시적인 형태의 반사회적 양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조직에 의한 구조적 폭력에는 최근 10여 년 간 국내에서 문제가 돼 왔던 노동조합 파괴를 위한 탄압(물리력에 의한 노동 3권의 박탈), 구조조정, 부당한 징계나 해고, 가학적 노무관리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대항권이 상실되거나 위축된 상태에서의 대인간 폭력이다. 대항권의 상실이란 자신의 신체적·심리적 안전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저항 또는 대항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적인 권리가 없거나 상실된 상태를 말한다. 즉, 권력이나 서열을 앞세운 폭력, 애초에 대항권이 존재하지 않는 고객에 의한 폭력, 나아가 동료 간이라 할지라도 집단화하여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 등의 상황들이다. 나아가 성과 관련한 모든 폭력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외력에 의한 폭력이다. 외부의 침입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 일체가 포함된다. 무장한 강도가 편의점에 침입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은행에서 발생하는 강도·상해 등 주로 현금을 취급하거나 보유하는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는 인격권의 침해다. 나이나 장애, 성, 언어, 정치적 지향,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행위, 구타나 상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위와 같은 폭력들은 언어적, 심리적, 물리적 형태를 구분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 그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 또한 폭력의 문제는 그것이 반사회적 범죄에 포함되거나 그 경계선 안에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심리적 위기의 대응도 이를 반영 할 수밖에 없다.



직장상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은 직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 상실이 아무리 고의성이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 할지라도 노동자들은 삶의 기반을 잃었다고 할 정도의 불안을 느낀다. 불가피한 파산, 폐업, 부도, 기업의 이전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심리적 위기상황 대응 및 법·제도의 한계

사람이 죽어야 개입하는 상황

현재 고용노동부 트라우마 관리 매뉴얼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노동자들에게 심리적 위기상황을 불러오는 사건들은 다양하다. 이러한 위기들은 자살이나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다. 사망사건 발생 시 긴급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위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들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당장의 사망사건이 아니더라도 위험작업에 노출돼 있거나 이전에 사망사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경우 단순한 예방적 접근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들어 태안화력의 경우 동일공정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러한 노동환경으로 노동자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외상사건을 경험하거나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외상사건으로 인한 단순 PTSD를 넘어 복합외상이 될 수 있으며, 치료의 기간도 그 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용자 측 인식과 태도로 인한 대응과정의 불안정성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위기개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용자측의 인식과 태도의 문제다. 최대한 빠르게 생산을 재가동하거나 작업중지 범위를 축소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태안화력의 경우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고, 초기 노동조합 및 관계자들의 원칙적인 대응으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용자측의 태도로 인해 트라우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사용자측은 첫째, 대상범위를 축소하려 시도한다. 목격자, 응급 구조자, 사고현장 수습자, 동일 공정 종사자, 동일부서 종사자, 안전 관리자, 재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던 동료 등 그 대상과 범위가 열려져 있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두 번째로는 조속한 종결을 바라는 경향이다. 고용노동부가 트라우마 관리를 명령한 것에 대해 이를 ‘빨리 해치우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상태나 의견은 무시되거나 고려되지 않는다. 때로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트라우마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의 확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생존자들이 자기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자측의 태도로 인해 오히려 노동자들은 대상화되거나 트라우마 관련 상담이나 일정들을 무시하거나 강한 불신을 표현하기도 한다. 나아가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

세 번째로는 일부 사용자들은 트라우마 관리 기관의 역할을 오해하기도 한다. 마치 사건충격도 검사나 면접평가를 통해 복귀할 수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를 구분해 주는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대응시스템 상의 한계

현재 노동현장의 심리적 위기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 트라우마 관련 매뉴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도 한 곳 뿐이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해에 걸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대규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 한 곳으로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근로자건강센터를 시행기관으로 설정했으나 센터의 규모나 상담사 규모는 차지하고라도 실제 현장중심적 트라우마 대응을 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 또는 민간, 단체 또는 개인들의 조력과 협력으로 이뤄져야 할 때가 많다. 더욱이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 회복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기관이나 개인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러한 과정들이 잘 이뤄지지 않거나 제한적이다.

원스텝 시스템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의료원들이 있고, 광역

및 기초단위 정신건강증진센터들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의료원들은 지자체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재정이 열악한 의료원들은 정신건강의 학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시스템 자체가 구축돼 있지 않다. 이러한 기관들을 포함해 시스템을 만들거나 적어도 광역단위라도 산재전문병원 및 트라우마 대응센터 형태의 노동전문 대응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지역단위 공동대응 체계와 관계망들을 만들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 사건처리과정과 분리되어 있는 트라우마 개입

사용자측이 서두르고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를 푸는 것이 트라우마 개입을 멈추는 이유가 되어선 안된다. 자신이 일하던 작업장에서 동료의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노동자들의 첫 번째 고통은 죄책감이며, 두 번째는 두려움과 공포다. 트라우마의 증상들을 모두가 겪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 혹은 사건현장을 다시 봐야하는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작업중지가 풀리면 노동자들은 복귀해야만 한다.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도 전에 복귀할 수도 있다. 작업중지를 풀고 정상가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이러한 노동자들의 상태는 고려되지 않는다.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개입 시기는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상태,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시기조절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정해진 일정대로 갈 수 없다. 무리한 접근은 반발심을 키울 뿐이다. 때로는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 충분히 설명하며 공유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하며, 노동자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시간들이 더 필요할 때도 있다.

의료적 지원이 배제된 문제

초기 위기대응과정에서의 핵심활동 중 하나가 병원진료나 치료가 불가피한 분들을 해당 병원에 연계하는 일이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불면에 시달리는 노동자에게 심리상담식의 기법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때로는 수면제 처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 상담전문가들은 이 경우 병원으로 안내하게 된다. 하지만 병원진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일부 기업의 사례에서는 초기 면접평가상담 과정에서 병원으로 안내를 받은 후 병원진료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했으나 거부당한 적도 있으며, 병원진료를 위한 시간조차 임금에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업재해 후 트라우마 대응 사례

(말관리사, 발전소하청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조성애



김성애, 이상관

1987년 11월 3일 오후 4시 10분 경 인천시 북구 구산동 산업재활원 7층에서 오른쪽 반신불수로 고통 당하던 산재노동자 김성애(18, 인천시 주안동 소재 진흥요업 근무)양이 투신 자살했다.

주위 동지들에게 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며 고뇌하였고, 같은 해 10월 20일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민정당 총재 노태우에게 진정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보통사람을 자처했던 노태우는 열사가 숨을 거둘 때까지 아무 답변이 없었다.

1999년 2월 경남 창원시 대우자동차 국민차사업부 직원 이상관(27)씨가 작업도중 허리를 다쳤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판정으로 증상이 악화돼 결국 6월 고통을 못이기고 자살했다.

국제구제금융 이후 산재보험금이 걷히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조치치료종결, 요양중단, 산재 불인정 등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을 심화시켰다.

2



말관리사



3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7 08 02 마필관리사 2달여새 3명 사망

- 고 박00 2017년 5월 27일 <부산경마공원>
- 고 김00 2017년 7월 <서울경마공원>
- 고 이00 2017년 8월 1일 <부산경마공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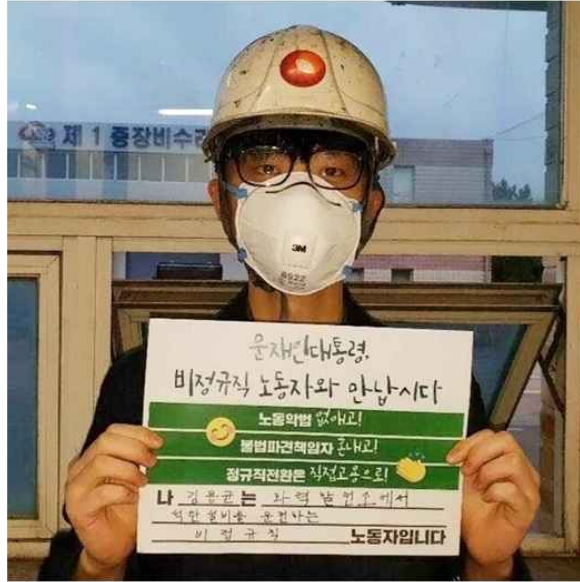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5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6



위험한 곳에 홀로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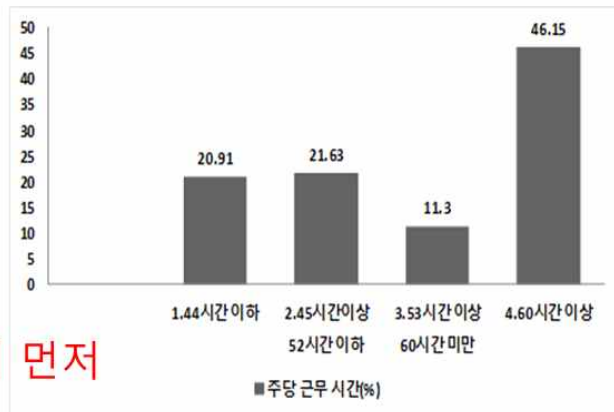
위험한 곳에 홀로 작업



인문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말관리사의 노동환경

- ✓ 주당 근무시간
평균 55.3시간
- ✓ 주당 60시간 이상
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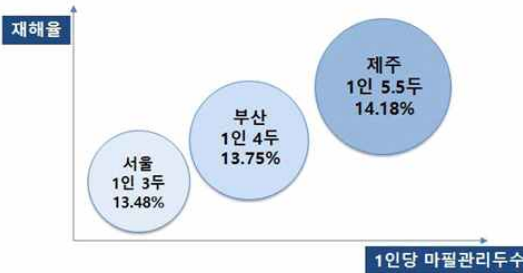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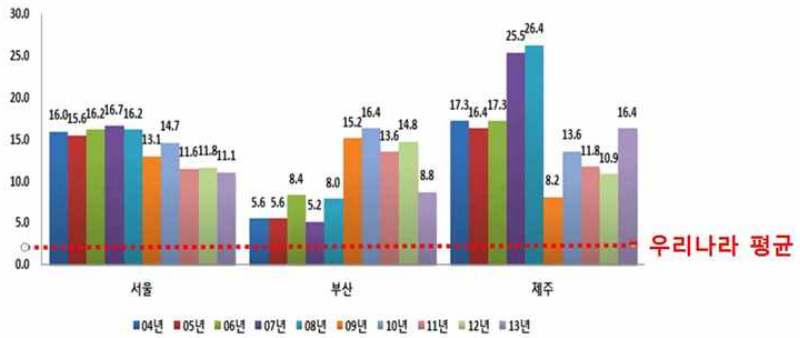


➡ **사람보다 말이 먼저**

<2014.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문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말관리사의 재해율



<2014. 노동환경건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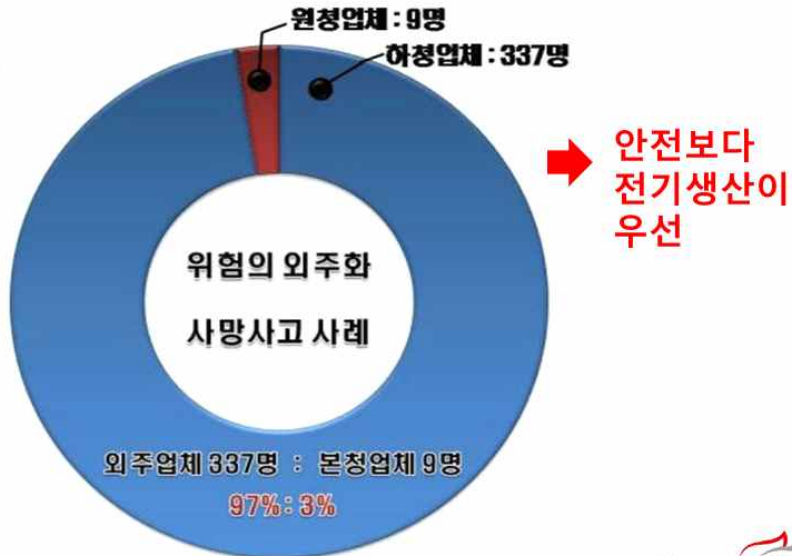


발전소 장시간 노동

총계 노동시간	기본시간	초과근무시간	연장근무시간
58.50	70.00	- 11.50	58.50
50.25	70.00	- 19.75	50.25
66.75	70.00	- 3.25	66.75
156.25	70.00	86.25	70.00
162.25	70.00	92.25	70.00
145.50	70.00	75.50	70.00
155.25	70.00	85.25	70.00
147.00	70.00	77.00	70.00
122.25	70.00	52.25	70.00
171.00	70.00	101.00	70.00
170.25	70.00	100.25	70.00
84.00	70.00	14.00	70.00
69.75	70.00	- 0.25	69.75
80.25	70.00	10.25	70.00
69.75	70.00	- 0.25	69.75
213.50	70.00	143.50	70.00
71.50	70.00	1.50	70.00
99.75	70.00	29.75	70.00
198.25	70.00	128.25	70.00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12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말관리사 자살(2017년)

- ✓ 5월 27일 박경근 열사 자결 (노동부지청 7월 감독시행)
- ✓ 8월 1일 이현준 열사 자결
- ✓ 8월 2-4일 작업중지요청 서명 : 전체 말관리사(182명. 90%)
- ✓ 8월 2일 응급구조, 작업중지 요청
: 노동조합 -> 고용노동부/ 부산근로자건강센터
- ✓ 8월 5일 응급구조 집행
: 고용노동부 -> 부산근로자건강센터
-> 공공운수노조
- ✓ 8월 10,14일 전체조합원 교육 및 설문(165명)
- ✓ 8월 17~9월 2일 : 특별근로감독
- ✓ 8월 24일 설문결과 설명회 : 전체 말관리사
- ✓ 9월 21일 업무협약 : 2018년 12월31일까지. 병원지정

13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태안화력발전 **협착사망**(2018년)

- ✓ 12월 10일 작업도중 김용균 노동자 협착사고 발생
- ✓ 12월 11일 03시 30분 고인 발견
- ✓ 12월 13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면담 시 트라우마 상담 요구
사고현장 방문
- ✓ 12월 14일 사망원인에 대한 브리핑(시민대책위)
현장노동자 대상 교육 및 설문(~2월까지 진행)
근로자건강센터, 지역 상담활동가
(국가트라우마센터 - 한시적 상담)
- ✓ 12월 필요한 조합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작
(현재 2인)
- ✓ 1월 22일 산재신청(1명)

14



노동부특별감독결과 (2017.8.17-9.2)

구분 산업안전 보건	위반 건수	행정 조치						사법 조치	권고	
		작업중지		사용중지		시정 명령 (지시)	과태료 부과			
		전면	부분	건수	댓수		건수			금액 (만원)
합계	525	-	47	56	78	322	270	46,615	255	60
한국마사회	376	-	47	54	76	213	139	24,518	237	42
협력업체	80	-	-	2	2	54	62	5,212	18	18
조교사	69	-	-	-	-	55	69	16,885	-	-

- ✓ 산업안전: **▶ 단일사건 최대 과태료**
사법처리 255건, 과태료 270건 4.6억원 등 총 525건

15



노동부특별감독결과 (2018.12.17~2019.1.11)

구분	위반 건수	사법 처리	과태료		사용중지		시정 명령	현지 지도 (권고)	시정 지시
			건수	금액	건수	대수			
전체	1029	728	284	66,700	8	13	939	74	17
한국 서부 발전	865	685	166	37,190	8	13	807	64	14
협력 업체	164	43	118	29,510	0	0	132	10	3

- 한국서부발전(태안화력발전본부) : 1,2,3 발전처 및 IGCC발전처 등
- 총 위반건수 865건, 사법조치 685건, 과태료 37,190만원
- 한전산업개발, 한전KPS, 한국발전기술 등 석탄운전 및 경상정비,
보일러 탈황운전 및 정비 등 하도급 분야(총 18개사)
- 총 위반건수 164건, 사법조치 43건, 과태료 29,510만원

16



노동부특별감독결과 (2018.12.17~2019.1.11)

구분	위반 건수	사법 처리	과태료		사용중지		시정 명령	현지 지도 (권고)	시정 지시
			건수	금액	건수	대수			
전체	1029	728	284	66,700	8	13	939	74	17
한국 서부 발전	865	685	166	37,190	8	13	807	64	14
협력 업체	164	43	118	29,510	0	0	132	10	3

단일최대

- 한국서부발전(태안화력발전본부) : 1,2,3 발전처 및 IGCC발전처 등
- 총 위반건수 865건, 사법조치 685건, 과태료 37,190만원
- 한전산업개발, 한전KPS, 한국발전기술 등 석탄운전 및 경상정비,
보일러 탈황운전 및 정비 등 하도급 분야(총 18개사)
- 총 위반건수 164건, 사법조치 43건, 과태료 29,510만원

17



경험은 축적·발전되어야 함

	말관리사 (2017년 8월)	발전 비정규노동자 (2018년 12월)
사고 유형	자살	사고성 재해
요구 방식	고용부 면담시 응급구조요구	면담시 트라우마상담 요구
담당	지역근로자센터(부산)	대구근로자센터(트라우마전담) 지역상담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초기만 결합)
대상	전체동료	전체동료 사고현장 노동자(하청, 원청)
산재처리	없음	1명 산재승인기간 길어지면서 회사 출근중용, 무급협박 등

18



경험은 축적·발전되어야 함

	말관리사	발전 비정규노동자
방식	설문 / 교육	설문 / 교육
	설문 결과에 따른 상담 설문 결과에 따른 병원연계	모든 노동자 개별상담 상담 후 필요시 병원 연계
자율성	근무중	특별휴가(12.15~3.3 / 11주) 평균임금 100% 지급
접근성	센터, 병원 방문	회사 내 → 외부(장례식장)
비용	회사부담 협약서 작성	회사부담 지역사회(지자체, 지역단체 등)

19



경험은 축적·발전되어야 함

	말관리사	발전 비정규노동자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사건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요구 ○ 전체 직원 교육과 설문진행 ○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첫 사례 ○ 단기간이 아닌 1년 이후까지 병원진료기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전수 상담 ○ 특별휴가를 통한 안정적인 상담(횟수, 시간에 구애 받지 않음) ○ 회사내 상담이 아닌 외부 상담 (불편해서 일하고 있었던 노동자들도 밖에서 진행) ○ 지역 상담활동가들 연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후 상담절차 없이 병원진료를 권유하면서 거부감(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고용 불안정한 상황에서 병원진료 기록이 부담스러움 ○ 교육 불충분으로 “나약한” “남자라면” 등의 인식이 만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대응시 우선순위 고려하지 않음 (회사에서 교대노동 순서대로 교육 실시)

20

경험은 축적·발전되어야 함

	말관리사	발전 비정규노동자
가족	자녀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부모님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들이 자신감 표현 ○ 사고원인에 대한 개선안 만들기를 통해 트라우마 극복에 도움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함을 말하지 못한 것은 일터에서 권리(인권)을 가지지 못함을 인식 ○ 일터에서 인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

21

마필관리사 중대재해 이후 심리 중재 관련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1. 부산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시행한 스크리닝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및 우울증 고위험군은 전문기관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연계하며 고위험군에 대한 개인정보 및 상세진료내역에 관하여 비공개가 원칙으로 함.
2. 부산근로자건강센터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마필관리사 개인에게 우선으로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를 취득 후 전문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설문조사결과 등을 제공함.
3. **조교사회회는 비용지불주체로서 협약기간내 발생한 병원, 진료비 일체를 부담함.** 협약기간: 2017.9.22. ~ 2018. (2.31.)
비밀유지기간: 2017.9.22. ~ 2018.12.31.
4.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 지불 형태는 협약기간 경과 후 개인별 진료비 지불형태가 아닌 협약 기간 동안 발생된 대상자 전체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로 함. 이는 전문기관과 합의 후 진행해야할 사항임.
5. 부산근로자건강센터는 상기 고위험군 외에 경도의 급성스트레스 장애군 및 우울증상군,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 등에 관한 심리 중재는 직접 실시하며, 집단 상담 및 개인 상담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교사회회 및 노동조합의 적극 지원을 요청함.

22



변화 협약서

변화(당정발표문)

- ❖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 ❖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 ❖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삭감 없이 지급되도록** 개편한다.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참조한다.)

23



변화(당정발표문)

- ❖ 금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는다.**
 - 전환방식,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다.
- ❖ 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변화(합의서)

6. 을은 하청노동자 등 산업재해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부한다.

- 가. 기부처 : 갑이 설립 또는 지정하는 비영리 법인
- 나. 금액 : 총 300,000,000원 (매년 100,000,000원)
- 다. 일시 : 2019년부터 2021년까지(3년간)
- 라. 제반 비용 : 세금 등 관련 제반 비용은 기부처에서 부담한다.

2019년 2월 5일

갑 : 유가족,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김용균)

을 :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합 의 서

갑 : 유가족,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을 : 한국서부발전

2018. 12. 10. 한국서부발전에서 작업중 고 김용균(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에게 발생한 사고(이하 '본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본 사고는 하청구조로 인한 인력 부족과 안전관리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을은 고인의 명예회복과 고인에 대한 시민들의 추모를 위해
 - 가. 회사내 특정장소(가족 및 해당 노동조합과 합의)에 사고 개요 및 추모의 내용을 담은 조형물을 장례 후 1개월 이내에 설치한다.
 - 나. 조형물과 관련한 내용은 유족, 시민대책위가 정한다.

그러나...

- ❖ 2019년 3월 4일 오후 2시,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 협착사고발생
- ❖ 회사발표 - 당사자 과실
"사고 현장설비 바로 옆에는 당해 설비 상단을 가로질러 건너 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 운전 중인 설비 사이로 통과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
- ❖ 개인 승용차 이송 - 산재은폐?, 사고정도에 대한 임의판단?
"태안화력 3호기에서는 2017년 11월 40대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큰 부상을 입었는데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개인차량으로 이송했다가 결국 사망"
- ❖ 노동자 인권은 없다 - 실명(당사자, 목격자)보도, 속옷차림 사진



산재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개선과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고병곤









